

#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                  |
|--------|------------------|
| 선<br>람 | 기<br>관<br>의<br>장 |
|        |                  |

제719호 2021. 3. 25.(목)

##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67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고시 ----- 1

##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424호 2021년 사천시 재난관리 실태 공고 ----- 2

## 입법예고

- 사천시 공고 제413호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입법예고 -- 47
- 사천시 공고 제422호 사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69

|        |  |  |  |  |  |  |  |  |  |  |
|--------|--|--|--|--|--|--|--|--|--|--|
| 회<br>람 |  |  |  |  |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719호

사천시 고시 제2021-67호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고시

사천시 고시 제2018-65호(2018.3.29.)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아래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5일

사 천 시 장

### 1.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 지역

| 사 업 명         | 위 치                      | 면적(㎡)   | 용도지역                    | 비고                |
|---------------|--------------------------|---------|-------------------------|-------------------|
| 사천서부일반산업단지 개발 | 사천시 곤양면 맥사리<br>66-2번지 일원 | 401,349 | 자연녹지, 계획관리,<br>농림지역, 기타 | 진입도로<br>(13,533㎡) |

### 2. 해제사유

- 사천서부일반산업 단지계획 수립

### 3. 해제일시 : 해제 고시일로부터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청 도시과(☎ 055-831-3165) 및 산업입지과(☎ 055-831-3460) 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사 천 시 공 보

제719호

사천시 공고 제2021-424호

## 2021년 사천시 재난관리 실태 공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공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재난관리실태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따라 우리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투자현황(예방·대비·대응·복구사업 등) 및 운영 성과 등을 알려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자율과 책임행정 강화로 재난관리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2020년도 재난관리실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3. 25.

사 천 시 장

### 1. 재난관리 실태 공시 총괄

◆ 2020년도에는 자연재난(태풍, 호우)이 발생하여 피해 및 복구사항이 있습니다.

- 우리시는 지난해 집중호우, 제8호 태풍 “바비”, 제9호 태풍 “마이삭”, 제10호 태풍 “하이선” 으로 사유재산(농경지)과 공공시설물에 96건의 피해가 발생
- 2020. 7.28.~8.11. 호우 외 3개 태풍에 의한 피해 복구비는 96건, 4억2230만원으로 산정

# 사 천 시 공 보

제719호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 제1항에 따른 예방실적으로
  - 폭염, 미세먼지 등 복잡 다양해지는 각종 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5개팀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신속한 재난수습을 위하여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 방재안전직렬 공무원 1명을 추가 채용하여 각종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 재난의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체계를 위해 재난 예·경보시설 9종 75점을 사천시 재난취약지역 등에 설치하여 운영
  - 매년 예·경보시설을 신규 설치 또는 노후 예·경보시설에 대해서는 교체사업 추진
  - 사천시 재난안전분야 담당공무원 74명은 국가민방위재난교육원 등에서 34개 과정의 재난안전 전문교육을 이수
  -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 쉼터 340개소, 그늘막 3개소 신규 설치 등 15개소, 물안개 분사장치 3개소 운영
  -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하여 시민안전봉사대원, 해상안전보안관 등 362명이 안전점검의 날 및 안전캠페인을 8회 실시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정비사항으로
  - 재난방지시설 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459억4700만원을 편성하여 만마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하천 및 소하천 정비 등 20개 재해 위험지 정비사업을 실시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및 장비·인력의 지정사항으로
  - 재난관리자원 비축을 위한 방재물자는 4종류, 의료시설 13개, 병원 병상수 2,911개, 수용시설 73개소 24,651명, 지진대피시설은 20개소 69,926명을 수용

# 사 천 시 공 보

제719호

- 장비는 구조구급장비 4종 425대, 복구장비 7종 94대, 의료방역·재난현장 환경정비 장비는 4종 4,739대, 제설장비 4종 86대, 기타 5종 191대를 보유
- 기술인력 8개 분야 257명, 기능인력 9개 분야 707명을 확보하였으며 자원봉사단체는 지역자율방재단, 시민안전봉사대, 주부민방위기동대 등 2,663명 확보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적립은 당해연도 확보기준액(739백만 원) 확보

- 2020년 법정적립액 739백만 원, 실질 적립액은 739백만 원으로 100% 적립하여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2020년도에 231건, 7,759백만 원을 재난예방 및 복구활동에 사용

## ◆ 「자연대책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 진단결과 C급으로 나왔습니다.

- 2020년 이후 진단 지표 및 등급 산출 변화로 증감원인 분석 불가

## ◆ 그 밖에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은 149개 시설 중 85개 시설에 대하여 내진 성능 확보 또는 내진보강이 완료되어 57%의 내진율을 보이고 있으며, 2021년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여 시설물 별로 소요예산을 확보, 효율적인 내진보강 실시 예정
- 재난대응 능력 제고를 위하여 홈페이지, 포스터, 전광판, SNS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
- 재난유형별 현장조치행동매뉴얼은 계속 수정 및 보완중이며, 우리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27개의 재난유형을 관리

# 사 천 시 공 보

제719호

-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우리시의 재난관리역량은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 체계, 안전관리 규정, 재난관리자원 확보, 시민 안전 체감도 제고를 위한 안전정책 강화, 시민안전의식 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등 사람 중심, 생명 중심의 “안전한 사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지진대비 공공사유시설 물에 대한 내진설계, 복합재난 대처를 위한 실질적인 대응 능력향상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
- ◆ 이에 사천시에서는 재난관리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시민 중심의 「재난ZERO화」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음

## 2. 재난관리 실태 세부 공시

### 1)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 현황

| 일시              | 피해원인             | 피해내용   | 복구내용           | 추진사항 |
|-----------------|------------------|--|----------------|------|
| 7.28.~<br>8.11. | 호우               | - 공공시설(산사태) 1건<br>43백만원  | - 공공시설(산사태) 복구 | 완료   |
| 8.8.~<br>8.9.   | 호우에 따른<br>남강댐 방류 | - 도로 및 방파제 파손 등<br>공공시설 11건 268백만원<br>- 주택 침수 9개소 등 사유<br>재산 21건 25백만원 | - 공공사유시설 복구    | 완료   |
| 8.24.           | 제8호 태풍<br>“바비”   | - 사유시설 2건 0.6백만원   | - 사유시설 복구      | 완료   |
| 9.01.           | 제9호 태풍<br>“마이삭”  | - 공공시설(산사태, 임도파손)<br>2건 67백만원<br>- 사유시설 11건 3.5백만원                     | - 공공사유시설 복구    | 완료   |
| 9.01.           | 제10호 태풍<br>“하이선” | - 사유시설 48건 15.2백만원   | - 사유시설 복구      | 완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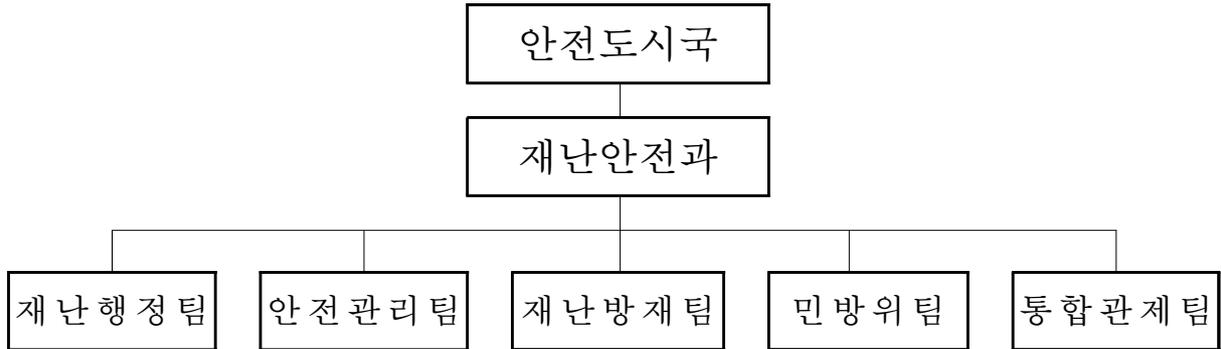
# 사 천 시 공 보

제719호

##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 조치실적

### ①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가. 기구



나. 정·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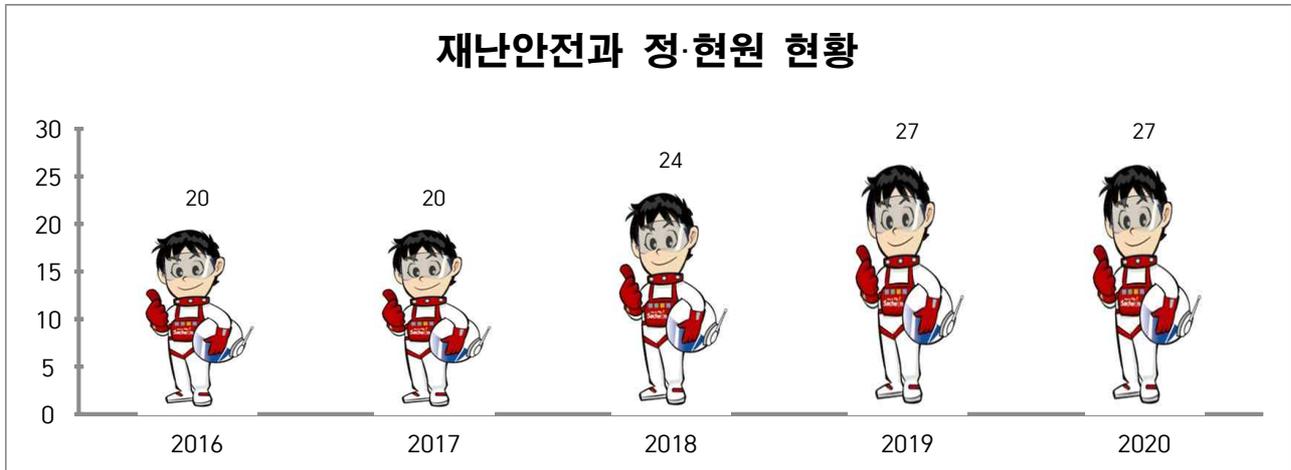
(2020. 12. 31. 기준)

| 구분        | 계  | 일 반 직 |    |    |    |    |    |    | 공무직 | 기타 |     |
|-----------|----|-------|----|----|----|----|----|----|-----|----|-----|
|           |    | 소계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     |
| 재난<br>안전과 | 정원 | 27    | 22 | 1  | 1  | 7  | 5  | 5  | 3   |    | 청경5 |
|           | 현원 | 27    | 22 |    | 2  | 8  | 6  | 3  | 3   |    | 청경5 |

### ◆ 연도별 비교

| 구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일반직 현원   | 20   | 20   | 24   | 27   | 27   |
| 방재안전직 현원 | 2    | 1    | 3    | 2    | 2    |

### 재난안전과 정·현원 현황



# 사 천 시 공 보

제719호

- 코로나19 등 복잡·다양해지는 각종 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5개 팀, 27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 2021년에는 자연·사회재난 등에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방재안전직 1명을 추가 채용·배치할 예정임

## ②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의 구축

### 가. 현황

| 구 분                      | 개 소 | 설 치 장 소   |
|--------------------------|-----|---|
| 계                        | 75  |   |
| 자동음성통보시스템                | 16  | 소곡·수청·능화·용소·우천·가산유원지, 하탑, 신수도, 삼천포유람선, 팔포, 구항만, 남일대해수욕장, 용두공원, 동서동행정보복지센터, 해양경찰서, 수협어판장 |
| 자동우량경보시스템                | 5   | 사천시청(2), 백천재(1), 백천계곡(2)  |
| 수위관측시스템(수위계)             | 2   | 대진교, 사천교  |
| 자동기상관측시스템<br>(AWS, 강우량계) | 14  | 정동, 용현, 사남, 축동, 곤양, 곤명, 서포, 선구, 동서, 벌용, 향촌, 남양, 신수출장소, 사천읍보건지소                          |
| 재난영상감시시스템<br>(CCTV)      | 10  | 동계제방, 가화제방, 문화원 앞, 당천마을, 가산교, 진널방파제, 용궁수산물시장(2), 남일대해수욕장, 삼천포(구항) 부두                    |
| 재해문자전광판                  | 7   | 남일대해수욕장, 백천계곡, 다솔사, 용소 유원지, 정동 수청마을, 팔포지구, 축동지구   |
| 민방위경보시설(사이렌)             | 8   | 사천읍, 사남면, 용현면, 곤양면, 청녘공원, 벌용동, 남양동, 동계배수펌프장   |
| DMB 재난경보방송시스템            | 7   | 축동면, 중앙시장(선구동), 향촌동, 정동면, 곤명면, 곤명면보건지소, 서포면   |
| 위성전화기                    | 6   | 재난안전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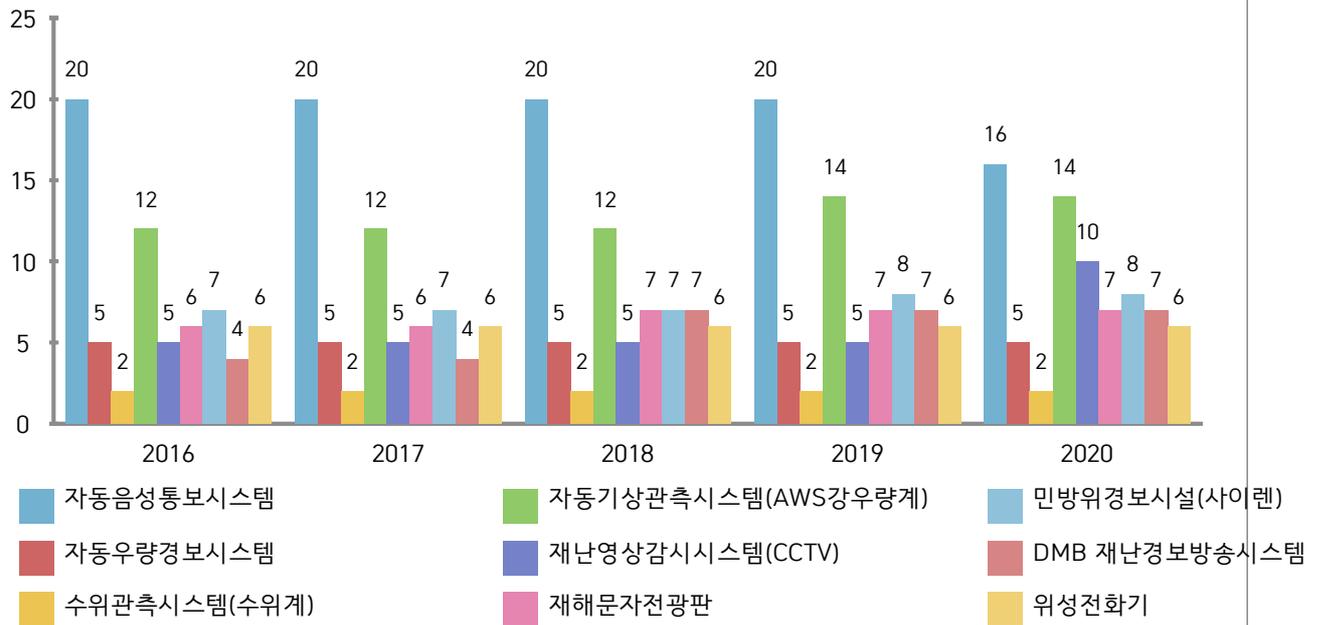
# 사 천 시 공 보

제719호

## 나. 연도별 비교

| 구 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계                    | 67   | 67   | 71   | 74   | 75   |
| 자동음성통보시스템            | 20   | 20   | 20   | 20   | 16   |
| 자동우량정보시스템            | 5    | 5    | 5    | 5    | 5    |
| 수위관측시스템(수위계)         | 2    | 2    | 2    | 2    | 2    |
| 자동기상관측시스템(AWS, 강우량계) | 12   | 12   | 12   | 14   | 14   |
| 재난영상감시시스템(CCTV)      | 5    | 5    | 5    | 5    | 10   |
| 재해문자전광판              | 6    | 6    | 7    | 7    | 7    |
| 민방위경보시설(사이렌)         | 7    | 7    | 7    | 8    | 8    |
| DMB 재난정보방송시스템        | 4    | 4    | 7    | 7    | 7    |
| 위성전화기                | 6    | 6    | 6    | 6    | 6    |

재난 예측, 정보전달시스템 현황



### ▷ 자동기상관측시스템(AWS) 교체 및 CCTV 설치 확대

-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사업에 465백만 원을 투입해 농어촌지역재난 경보·방송장비 확대, 민방위경보시설, 기상관측 장비구축 등을 추진하였으며, 관내 주요지점 기상관측 정보를 실시간 확인하는 등 다양한 재난 정보자료로 활용 중

# 사 천 시 공 보

제 719 호

## ③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에방에 관한 홍보

가. 재난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 현황

○ 방재담당공무원의 전문성(재난안전 관련 분야) 교육

| 과정명                         | 기간(일) | 교육기관         | 인원 | 비고 |
|-----------------------------|-------|--------------|----|----|
| 계                           |       | 34과목         | 42 |    |
| 재난안전미래기술과정                  | 2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 1  |    |
| 안전책임관재난안전전문과정               | 1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 1  |    |
| 재난대비역량지원(풍수해)과정             | 3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 2  |    |
| 자연재난대응과정                    | 2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 6  |    |
| 급경사지관리과정                    | 3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 1  |    |
| 재난안전이해과정                    | 2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 5  |    |
| 재난안전신규자과정                   | 3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 3  |    |
| 기후재난대응과정                    | 3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 2  |    |
| 재난관리실무과정                    | 3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 2  |    |
| 재난안전실무자과정                   | 3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 3  |    |
| 기후변화와 재난관리과정                | 5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 2  |    |
| 재난구호일반과정                    | 5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 1  |    |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과정               | 5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 1  |    |
| 안전점검실무과정                    | 3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 1  |    |
| 재해복구실무과정                    | 3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 2  |    |
| 댐붕괴과정                       | 3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 1  |    |
| 승강기담당직무역량과정                 | 2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 1  |    |
|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br>추진 및 평가계획교육과정 | 1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 2  |    |
| 지진재난대비과정                    | 3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 2  |    |
| 재난정보통신과정                    | 3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 1  |    |
| 재난안전법령과정                    | 1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 1  |    |
| 재난관리총론과정                    | 1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 1  |    |

# 사 천 시 공 보

제719호

| 과정명            | 기간(일) | 교육기관         | 인원 | 비고 |
|----------------|-------|--------------|----|----|
| 지진·지진해일실무과정    | 1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 1  |    |
| 생활안전과정         | 1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 1  |    |
| 재난구호일반과정       | 1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 1  |    |
| 재난통신망운영관리과정    | 2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 1  |    |
| 재난안전힐링과정       | 5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 2  |    |
| 재난현장드론활용과정     | 3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 2  |    |
| 재난구호심리과정       | 3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 1  |    |
| 재난대비훈련실무과정     | 1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 1  |    |
| 소규모공공시설관리실무과정  | 1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 1  |    |
| 자연재난피해복구지원실무과정 | 1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 1  |    |
| 재난안전관리자과정      | 1     | 경남인재개발원      | 9  |    |
| 재난관리실무과정       | 3     | 경남인재개발원      | 11 |    |

## ○ 지역자율방재단 재난관리 교육·훈련

| 일시     | 장소               | 참석인원 | 내용                 | 주관        | 비고 |
|--------|------------------|------|--------------------|-----------|----|
| 계      |                  | 3    | 2과목                |           |    |
| 11. 3. | 대한적십자사<br>경상남도지사 | 1    | 응급처치법 전문교육         | 행정<br>안전부 |    |
| 11. 6. | 호텔인터내셔널<br>창원    | 2    | 재난 현장 대응능력 향상 등 교육 | 행정<br>안전부 |    |

## ○ 재난관리에방을 위한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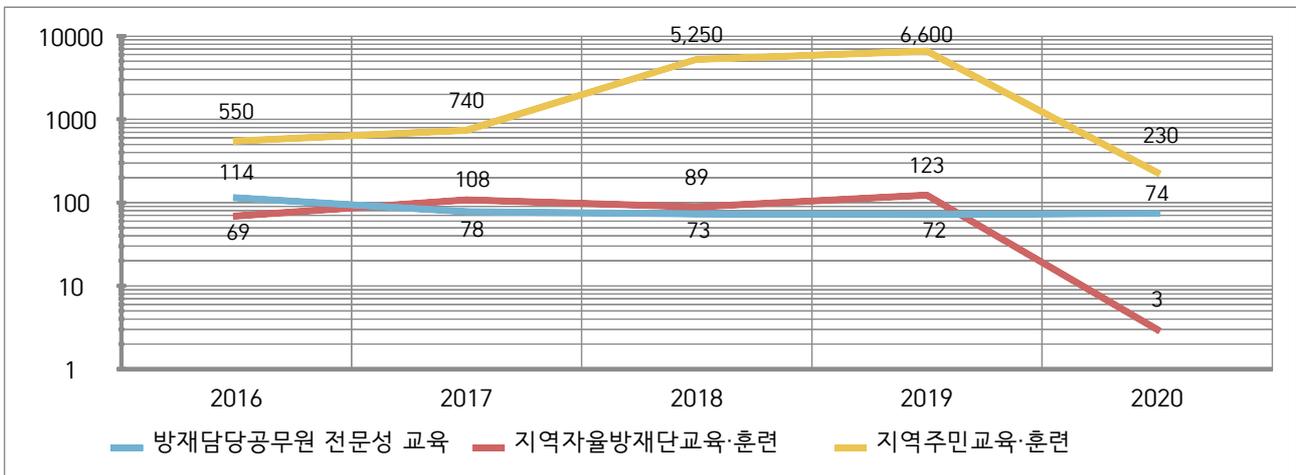
| 교육훈련명                             | 일시             | 장소            | 참석인원 | 내용                          | 주관        |
|-----------------------------------|----------------|---------------|------|-----------------------------|-----------|
| 계                                 |                |               | 153  |                             |           |
| 2020년 물놀이 안전관리요원<br>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교육 | 2020.6.16.(화)  | 우천마을          | 16   | 심폐소생술 및<br>응급구조장비 사용법       | 사천<br>소방서 |
| 민방위실기경진대회<br>대비 사전교육              | 2020.7.17.(금)  | 민방위<br>교육장    | 20   | 심폐소생술, 응급처치<br>방법 교육        | 사천시       |
| 주부민방위기동대<br>소방안전교육                | 2020.10.21.(수) | 민방위<br>교육장    | 17   | 심폐소생술 및 소화기<br>사용법 등 소방안전교육 | 사천시       |
| 산불예방 교육                           | 2020.11.1.(월)  | 읍면동<br>행정복지센터 | 100  | 산불예방 및 진화요령 등               | 사천시       |

# 사 천 시 공 보

제719호

##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 구 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계              | 733  | 926  | 5,412 | 6,795 | 230  |
| 방재담당공무원 전문성 교육 | 114  | 78   | 73    | 72    | 74   |
| 지역자율방재단교육·훈련   | 69   | 108  | 89    | 123   | 3    |
| 지역주민교육·훈련      | 550  | 740  | 5,250 | 6,600 | 153  |



### ▷ 교육·훈련 참석인원 증감원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법정 의무 교육시간을 명시함에 따라 재난관련부서 근무자들의 전문성 강화교육을 확대하고 있으나, 2020년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해 공무원의 전문성 교육은 온라인 교육 등으로 차질없이 진행하였으나,
-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으로 인하여 을지태극 연습, 민방위훈련 등 대부분의 훈련이 취소됨에 따라 지역주민교육·훈련 실적이 대폭 감소

### 라) 안전모니터봉사단 활동실적

#### ○ 제보·처리 실적

| 봉사단원(인원수) | 제보실적(건) | 처리실적(건) |    |    | 비 고 |
|-----------|---------|---------|----|----|-----|
|           |         | 완료      | 진행 | 불가 |     |
| 14        | 8       | 8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719호

## 마) 재난관리 관련 홍보실적

### (1) 현장홍보 실적(안전점검의 날 행사, 캠페인 등)

| 연 번 | 행 사 명                             | 주 요 내 용   | 장 소                    | 참석<br>인원 | 비고 |
|-----|-----------------------------------|---|------------------------|----------|----|
|     | 합계                                |   |                        | 362      |    |
| 1   | 설맞이<br>안전점검의 날<br>및 안전문화운동<br>캠페인 | 겨울철 화재예방 등<br>각종안전사고 예방수칙,<br>안전신문고 홍보, 7개<br>안전무시관행 근절 | 삼천포용궁수산시장              | 40       |    |
| 2   | 여름철<br>재난대비<br>안전문화운동<br>홍보 캠페인   | 안전신문고 홍보, 올바른<br>마스크 착용 리플릿 배부                          | 사천읍 탑마트 앞              | 40       |    |
| 3   | 하반기<br>주부민방위기동<br>대 캠페인           | 가을철 화재예방 및 비상대비<br>행동요령 홍보                              | 삼천포종합시장                | 40       |    |
| 4   | 9월 해상안전<br>보안관 캠페인<br>및 순찰활동      | 9월 해상안전시설물 점검 및<br>순찰                                   | 신항마을, 진널<br>방파제, 해수욕 등 | 6        |    |
| 5   | 10월 해상안전<br>보안관 캠페인<br>및 순찰활동     | 10월 자연보호선포현장<br>선포식 기념식 연계 캠페인<br>및 위험시설물 순찰            | 늑도항, 굴항진 등             | 6        |    |
| 6   | 289차<br>안전점검의날<br>방역 및 캠페인        | 전읍면동 방역 취약지역 방역<br>소독 작업 실시                             | 소규모 종교시설<br>노인요양시설 등   | 60       |    |
| 7   | 3/4분기<br>안전점검의 날                  | 코로나19 대응 마스크착용<br>홍보                                    | 사천읍시장 일대               | 30       |    |
| 8   | 4/4분기<br>안전점검의 날                  | 코로나19 안전신고<br>안전신문고 앱 홍보<br>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전개              | 사천읍 수양초등학교<br>외 7      | 140      |    |

# 사 천 시 공 보

제719호

## (2) 언론 보도 및 기고실적(신문, 방송 등)

| 연번 | 기사제목                                      | 주요내용  | 보도일자   | 언론사   | 비고 |
|----|---|---|--------|-------|----|
| 1  | 사천시, 안전한 사천시 만들기 안전보안관 모집                 | 지역 사정에 밝은 주민들이 생활주변 위험요인 신고 등 예방활동으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천시 안전보안관' 모집       | 1. 15. | 뉴스1   |    |
| 2  |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신규 단원 모집                     | 지역주민이 재난 수습에 일정 역할을 맡는 선진국형 방재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자율방재단 신규 단원 모집                  | 2. 3.  | 쿠키뉴스  |    |
| 3  | 사천시,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 추진                      | 자연재해로부터 농가경영의 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 도모를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 추진                        | 2. 12. | 경남데일리 |    |
| 4  | 사천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한다... 최종 선정         | 국토교통부 주관 '2020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공모사업' 에 최종 선정                            | 2. 13. | 뉴시스   |    |
| 5  | 사천시, 철새도래지 고병원성 AI 차단 방역 강화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지역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해 AI 차단 방역                      | 2. 18. | 연합뉴스  |    |
| 6  | 사천시, '코로나19 유입 차단' 열화상 카메라 6곳 추가 설치       | 코로나19 감염증 선제적 예방 강화를 위해 사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여성회관, 평생학습센터 등 6개소 열화상 카메라 설치        | 2. 20. | 경남데일리 |    |
| 7  | 사천시, 코로나-19 청정지역 유지 총력 대응                 |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편성 운영, 24시간 비상방역 대책반 가동, 열화상카메라 확대 설치, 시외버스 터미널 자외선 살균기 설치 등 | 2. 25. | 뉴스프리존 |    |
| 8  | 사천시, 코로나19 차단 일제방역 '올인'                   | 14개반 42명으로 특별방역소독반 운영,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시가지 소독                                  | 3. 4.  | 뉴스경남  |    |
| 9  | 사천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행사 중단 권고      |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예방을 위해 관내 248개 종교시설 종교행사 및 집회 중단 권고                         | 3. 4.  | 경남데일리 |    |
| 10 | 사천시, 국외입국자 수송 준비 완료                       | 인천공항서 생활관리시설로 소송 준비를 완료하여 코로나19 국외 유입 발생 차단                               | 3. 31. | 경남매일  |    |
| 11 | 사천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가족을 위한 '안심숙소' 3개소 지정, 운영 | 해외입국자는 '자택', 가족은 '안심숙소' 에서 생활하여 가족간 2차 감염 봉쇄                              | 4. 19. | 부산일보  |    |
| 12 | 사천시,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납부세대에 최대 50만원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 4. 23. | 브릿지경제 |    |
| 13 | 사천시, 코로나19 대응 59개 지원대책 추진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7개 분야 59개 시책 추진                                       | 5. 11. | 뉴스1   |    |

# 사 천 시 공 보

제 719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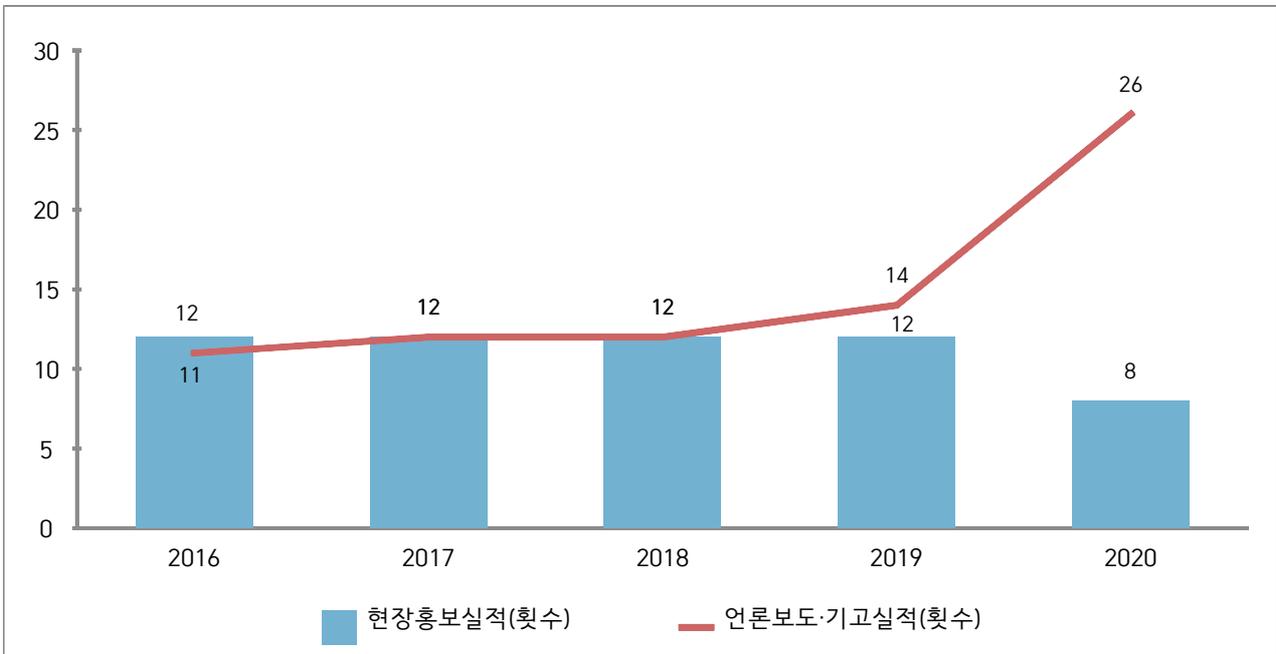
| 연번 | 기사제목                                    | 주요내용   | 보도일자    | 언론사   | 비고 |
|----|---|--|---------|-------|----|
| 14 | 사천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천형 방문자관리시스템 도입    | 휴대폰 인증을 통한 방문자관리시스템 시범 운영                                  | 6. 4.   | 신아일보  |    |
| 15 | 사천시, 재난관리평가 2년 연속 '우수'                  |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도 재난관리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 6. 5.   | 경남일보  |    |
| 16 | 사천시, 폭우 대비 휴양림 조성사업지 안전사고 예방 점검         | 호우특보와 돌발성 폭우 등 자연재난 대비를 위해 사천바다케이블카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지 안전사고 예방 점검 | 8. 11.  | 뉴스프리존 |    |
| 17 | 경남 사천시, 재난현장 드론 촬영 현장 파악 신속 대응          | 재난현장 드론 촬영영상 통해 신속한 재난상황 파악 및 대처                           | 8. 12.  | 연합뉴스  |    |
| 18 | 경남 사천시, 폭염 대비 스마트 그늘막 추가 설치             | 사천읍 수양초 사거리 등 3개소 폭염대비 스마트 그늘막 추가 설치                       | 8. 19.  | 데일리한국 |    |
| 19 | 송도근 시장,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상황 점검회의 개최 |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점검회의 개최해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대응방안 점검   | 8. 21.  | 일요신문  |    |
| 20 | 사천시, 제8호 태풍 '바비' 대비 총력 대응               | 13개 협업반 및 유관기관 참석해 태풍의 예상 진행 경로와 기상상황, 사전조치, 대처계획 점검       | 8. 26.  | 뉴스경남  |    |
| 21 | 사천시, '재난 안내' 문자 서비스 확대                  | 지역별 재난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 9. 1.   | KBS   |    |
| 22 | 사천시, 제9호 태풍 '마이삭' 대비 총력 대응              | 13개 협업반 부서장과 읍면동장이 참석하여 긴급대처사항 점검과 상황 판단회의                 | 9. 2.   | 쿠기뉴스  |    |
| 23 | 제10호 태풍 하이선 접근에 사천시 비상대응 나서             | 전 부서장·읍면동장 비상회의, 현장점검 강화                                   | 9. 6.   | 뉴스사천  |    |
| 24 | 사천시, 상습 침수 '고읍선 인지구' 정비 추진              | '고 읍·선 인 지구' 행 안 부 '2021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공모사업'에 선정           | 9. 23.  | 뉴스1   |    |
| 25 | 사천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완료                                       | 12. 21. | 뉴스1   |    |
| 26 | 사천시,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지침 위반업소 행정처분 나서          |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위반사항 적발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대응                      | 12. 23. | 프라임경제 |    |

# 사 천 시 공 보

제719호

## (3)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 구 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현장홍보실적(횟수)    | 12   | 12   | 12   | 12   | 8    |
| 언론보도·기고실적(횟수) | 11   | 12   | 12   | 14   | 26   |



### ▷ 안전한 사천 실현 홍보

-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으로 재난발생 원인의 환경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처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문화 캠페인을 실시하고 언론 보도를 26회 실시하였으며 안전한 사천 실현 홍보
- 각종 재난 사전대비 훈련의 중요성을 시민이 인식할 수 있도록 재난대비 실전훈련에 시민, 주부민방위기동대, 지역자율방재단원을 소집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실전체험 기회를 제공

# 사 천 시 공 보

제 719 호

바)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1)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가) 기본적인 안전관리체계

① 안전관리기구의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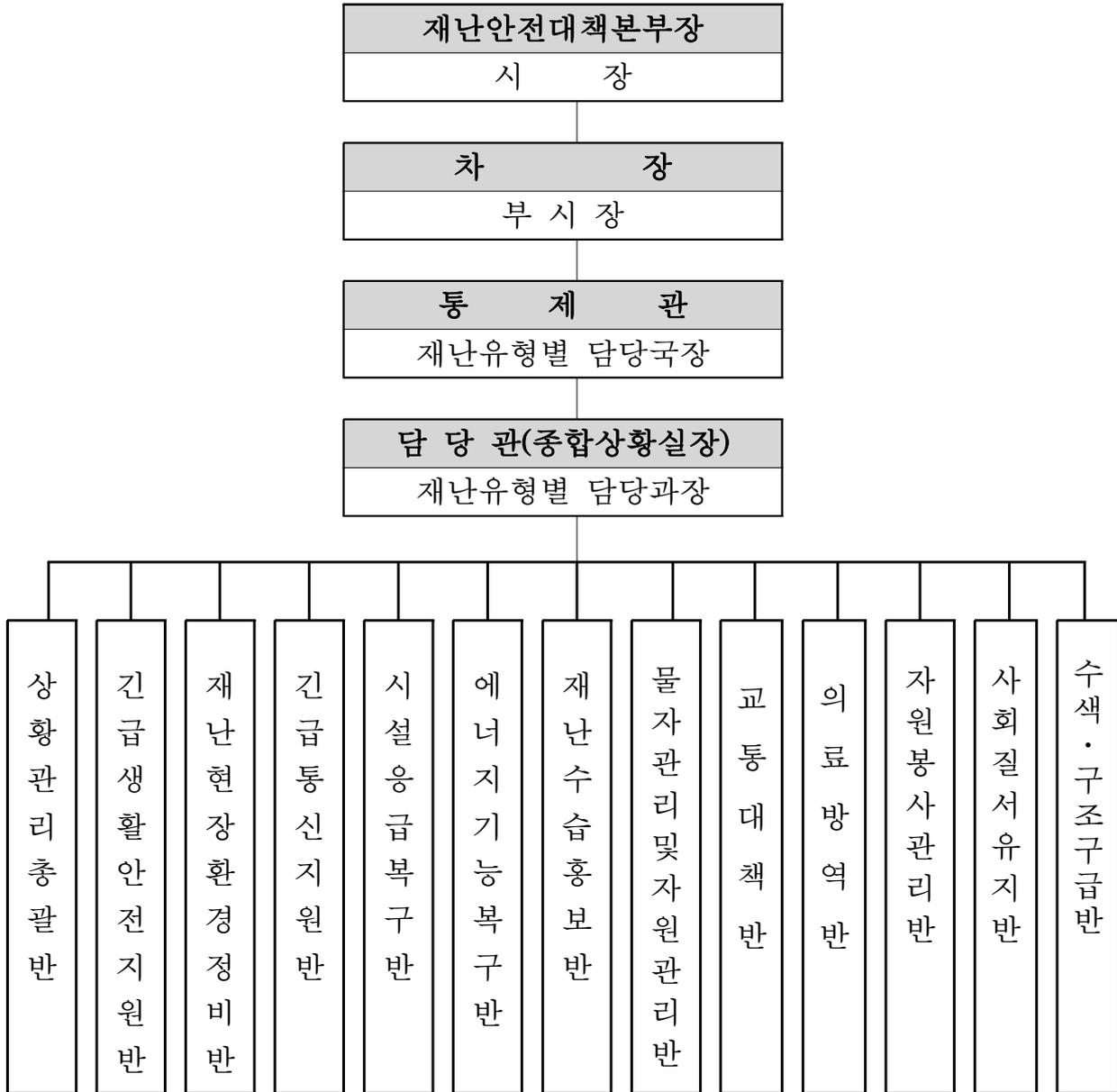
| 구분                     | 근거                 | 구성                       | 기능  |
|------------------------|--------------------|--------------------------|---|
| 안전관리위원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 - 위원장: 시장<br>- 위 원: 13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li> <li>· 안전관리계획안 심의</li> <li>·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li> <li>·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지역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li> </ul> |
|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 같은 법 제11조 제3항      | - 위원장: 부시장<br>- 위 원: 10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재해대처계획) 심의</li> </ul>  |
|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재난안전 대책본부) | 같은 법 제16조          | - 본부장: 시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li> <li>·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li> <li>·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li> <li>·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ul>                 |
| 재난종합상황실 설치·운영          | 같은 법 제18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 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li> </ul>  |
| 재난상황의 보고               | 같은 법 제20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 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재난상황과 응급조치 및 수습내용 보고</li> <li>· 시장 → 도지사 → 행정안전부장관</li> </ul>                              |
| 재난 신고                  | 같은 법 제19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 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고</li> <li>· 시, 긴급 구조기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li> </ul>                                     |

# 사 천 시 공 보

제719호

## ②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 조직



## ③ 재난관리기능의 임무 및 역할

○ 상황관리 총괄: 재난총괄담당 업무 수행(재난안전과)

\* 타 기능에 대한 상황관리 총괄 및 상호협력을 위한 지원 사항 등 파악

○ 긴급생활 안정지원: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및 이재민구호 등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 긴급 대책 지원(주민생활지원과)

\* 인명피해(사망·부상·실종), 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제외

# 사 천 시 공 보

제719호

- 재난현장 환경정비: 쓰레기 등 수거·처리 지원  
(환경사업소, 해양수산과)
  - \* 환경 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환경정비 지원
- 긴급 통신지원: 통신두절지역 통신시설 기반 복구(정보통신과)
  - \* 통신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통신 지원
- 시설 응급복구: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지원(해당부서)
  - \* 공공·사유시설(환경·통신·에너지·교통시설 제외) 피해현황 및 응급복구 상황 총괄
- 에너지 기능복구: 가스·전기·유류 등 국민생활 밀착형 피해시설  
기능 회복 지원(지역경제과)
  - \* 에너지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에너지 지원
- 재난수습 홍보: 재난대처·수습과 관련한 각종 정보 배포·조정  
(공보감사담당관)
  - \* 타 기능에 대한 사회적 이슈 등 언론사항 총괄관리 및 지원
-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국가 재난물자계획, 관리, 지원 및 적정상태  
유지(재난안전과)
  - \* 타 기능에 대한 물자·자원(장비·자재·시설) 지원 총괄관리
- 교통대책: 육상(육로, 항공), 해상 교통수단 지원(민원교통과)
  - \* 교통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수송 지원
- 의료·방역: 재난지역 공중보건서비스 지원(보건위생과)
  - \* 의료·방역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의료 지원
- 자원봉사 관리: 재난지역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주민생활지원과)
  - \* 타 기능에 대한 인력(민·관·군) 지원 총괄관리
- 사회질서 유지: 재난지역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사천경찰서)
  - \* 교통, 범죄, 현장통제, 안전관리, 주민보호(대피 등) 등 총괄관리
- 수색·구조·구급: 재난지역 구조·구급 지원(사천소방서)
  - \* 인명구조, 응급처치, 응급운송 및 사망·실종자 수색 등 총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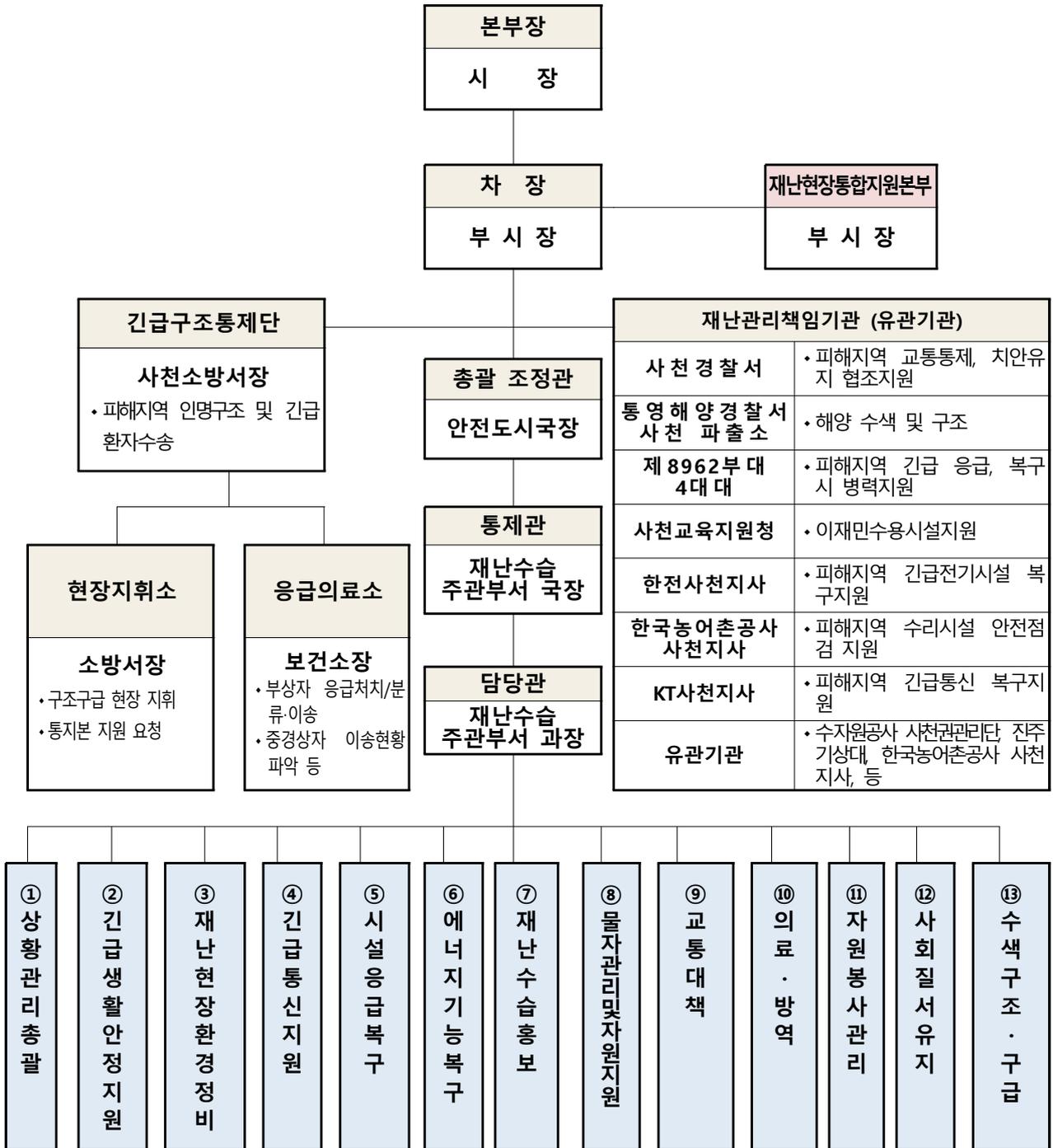
# 사 천 시 공 보

제719호

## (나) 주요재난별 안전관리체계

### ① 풍수해

#### □ 상황체계도



# 사 천 시 공 보

제719호

## □ 기관별 임무 및 역할

| 기관별                     | 임무 및 역할  |
|-------------------------|--|
| <p>사천시<br/>재난안전대책본부</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풍 기상정보 및 진행상황 전파보고</li> <li>○ 상황판단회의 개최(위기경보 발령) - 종합상황실장</li> <li>○ 위기(재난)상황 전파 및 대국민 행동요령 홍보</li> <li>○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li> <li>○ 유관기관 및 지자체 비상근무 실시 요청·지시</li> <li>○ 위험취약 시설물 점검 및 초동 복구 작업 준비 지시</li> <li>○ 응급구조 및 이재민 수용 준비 지시</li> <li>○ 긴급구조기관 비상근무체제 확립 지시</li> <li>○ 피해지역 현지상황 및 진행상황 파악</li> <li>○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개최</li> <li>○ 긴급구조통제단 구성 및 운영</li> <li>○ 피해상황 파악 및 집계</li> <li>○ 응급복구 및 2차 피해우려지역 긴급조치 지시</li> <li>○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인력·장비 지원 협조 요청</li> <li>○ 응급복구 현황 파악 및 최종 피해현황 파악</li> </ul> |
| <p>재난안전과</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풍대비 소관시설물 사전점검·확인</li> <li>○ 비상연락망 구축 및 비상근무태세 유지</li> <li>○ 읍면·동 및 유관기관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시행</li> <li>○ 인명피해 예방 및 교통통제 지시</li> <li>○ 소관 피해시설 조사 및 응급복구대책 수립·시행</li> <li>○ 신속한 응급복구 대응체제 구축여부 확인</li> </ul>   |
| <p>공보감사담당관</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중매체를 통한 재해 예·경보 발령사항 등 재난방송 국민행동 요령 전파, 대국민 홍보지원</li> <li>○ 민심안정, 재난수습·복구활동 국민 참여 유도, 보도자료 작성 배포 및 재난현장 등 언론보도지원</li> <li>○ 재난상황 언론 브리핑 지원</li> <li>○ 특별지시사항 이행실태 점검 및 지도</li> </ul>   |

# 사 천 시 공 보

제 719호

| 기관별            | 임무 및 역할   |
|----------------|---|
| 지역경제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력시설의 원활한 가동지원을 위한 재난대비 안전점검</li> <li>○ 전력, 가스, 석유시설의 공급중단대비 대책 수립</li> <li>○ 주민생활 편의시설(Life-Line) 조기복구를 위한 유관기관 협조체계구축</li> <li>○ 전기, 가스 지원 조치</li> </ul>   |
| 정보통신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발생지역의 응급통신대책 및 복구계획수립</li> <li>○ 재난지역 지휘통제를 위한 긴급 통신망 확보</li> <li>○ 통신두절 대비 전송선로 및 연락수단의 다원화 대책강구</li> </ul>   |
| 민원교통과<br>도로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시설물 피해예방대책 수립·추진</li> <li>○ 도로·철도두절 상황파악 및 응급복구실시</li> <li>○ 재난지역 교통소통 대책 추진</li> <li>○ 교통상황 안내 및 홍보, 긴급수송 운송대책 강구</li> <li>○ 태풍호우로 인한 교통두절 시 교통소통 대책</li> </ul>   |
| 기술지원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재해 상황실운영 및 피해상황 파악보고</li> <li>○ 농경지 및 농작물의 보호와 관리 및 피해예방대책 추진</li> <li>○ 비닐하우스, 특용작물시설 등 농림시설 보호대책 조치</li> <li>○ 표준규격 및 그 이상의 설계강도 농림시설 설치 지도</li> <li>○ 태풍 시 대처방법 홍보 및 교육, 농작물 복구계획수립 추진</li> </ul>                           |
| 건설과<br>상하수도사업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리시설물 관리책임자 현장배치 및 점검 등 관리강화</li> <li>○ 저수지 및 양수장시설, 배수문 이상 유무 확인 점검 정비</li> <li>○ 용·배수로 정비 및 사면붕괴 등 피해예방대책 수립·추진</li> <li>○ 상수도 시설 등의 재해대책 강구</li> <li>○ 비상 시 먹는 물 공급대책, 이재민 식수공급 등 급수계획 수립</li> </ul>                          |
| 해양수산과<br>환경사업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해쓰레기 수거 및 폐기물 처리계획 수립</li> <li>○ 태풍 피해지역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 강화</li> </ul>  |
| 녹지공원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휴양시설 배수로 설치 및 휴양객 대피계획</li> <li>○ 산사태 취약지역 및 임도 피해 우려지역 등에 예찰 강화</li> <li>○ 산사태 위험지 예측정보제공 및 관리</li> <li>○ 산사태 위험지 및 취약시설 등 산림재해 예방대책 마련</li> <li>○ 산지개발지역, 절개지 등에 토사유실 방지조치</li> <li>○ 산사태 발생이 접수되었을 때 신속한 복구지원 조치</li> </ul> |

# 사 천 시 공 보

제71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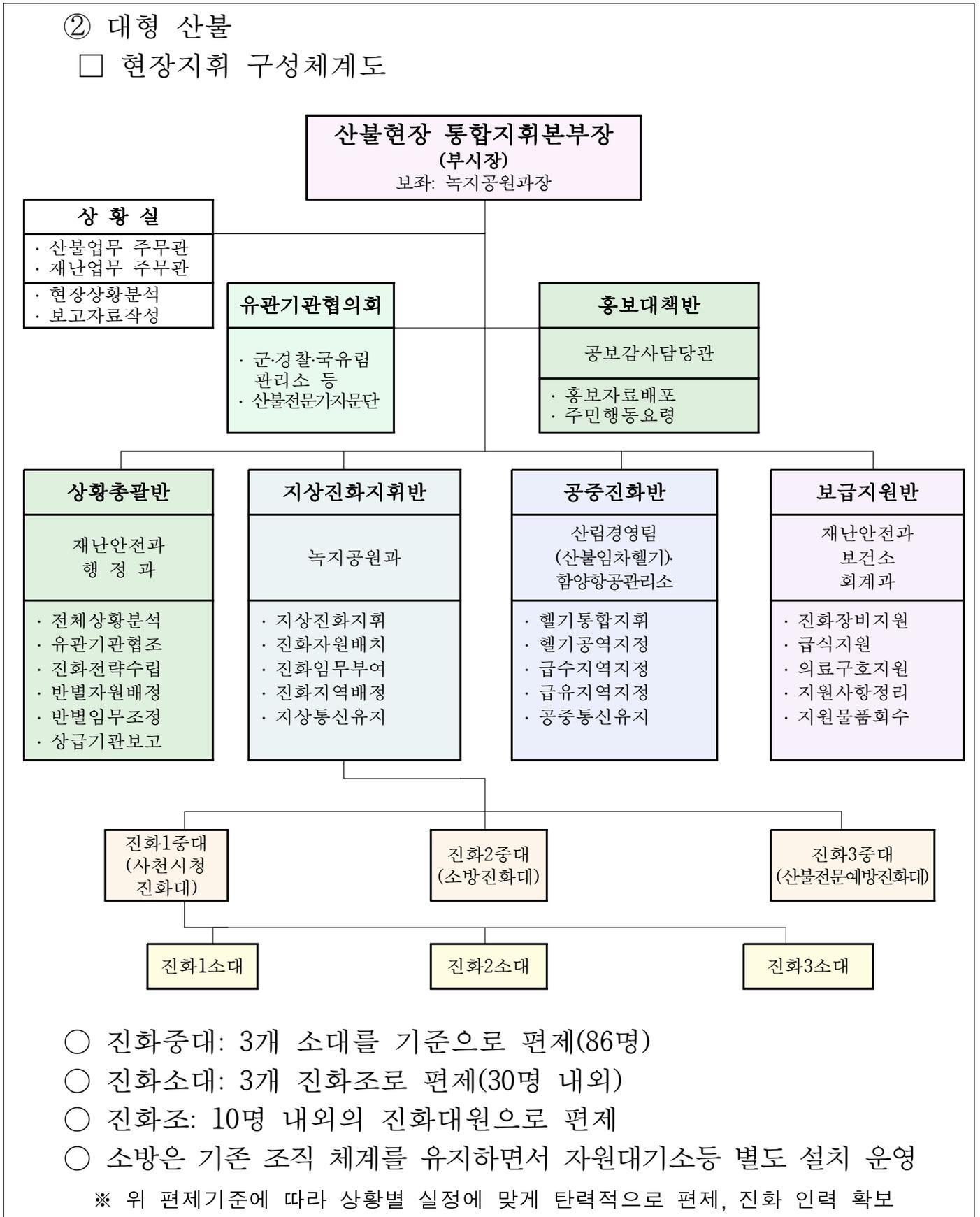
| 기관별            | 임무 및 역할  |
|----------------|--|
| 농축산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산시설 피해예방 및 가축보호 대책 추진</li> <li>○ 무허가 시설 집중계도 및 가축재해보험 등 가입유도</li> <li>○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추진, 축산분뇨처리시설 운영실태 점검</li> </ul>   |
| 해양수산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규모 어항시설 안전여부, 내수면 증양식시설 안전점검</li> <li>○ 수산 양식시설 및 생물보호 경감대책, 어장 표준설계규격 이행 철저 지도</li> <li>○ 선박 피해현황 파악 및 조치상황 점검</li> <li>○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li> </ul>          |
| 주민생활지원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재민 수용시설 및 재난구호 비축물자관리, 점검, 지원</li> <li>○ 이재민구호센터 운영 및 임시주거시설 관리, 지원</li> <li>○ 봉사요원(적십자 봉사대)과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li> </ul>  |
| 보건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지역 기동의료반 편성·운영으로 진료 및 방역활동 지원</li> <li>○ 사상자 신속한 처치 및 이송</li> <li>○ 이재민 대피시설 긴급의료지원 및 재난지역 방역 조치</li> <li>○ 전염병 등 질병확산 방지대책 수립추진 및 지역거점병원, 치료제 등 자원 확보</li> </ul> |
| 진주기상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상특보, 예보, 예측정보 신속전파, 상환판단회의(요청 시)</li> </ul>  |
| 사천교육지원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휴업, 등교시간조정, 단축수업 등 응급수업대책 및 학생 안전대책추진</li> <li>○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학교 운영 및 이재민 수용</li> <li>○ 학교피해시설 현황 파악 및 복구조치</li> </ul>   |
| 제8962부대<br>4대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급복구 군부대 인력·장비 동원 준비·지원</li> <li>○ 군부대 주변도로 제설 실시</li> <li>○ 교통두절 및 고립 시 헬기 등 가용수단을 활용한 구조 지원</li> </ul>  |
| 사천경찰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습침수구간, 피해(예상)지역 등 교통통제 및 교통흐름 조정</li> <li>○ 피해지역 치안 유지 및 범죄예방</li> <li>○ 군부대, 소방서,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시행</li> </ul>  |
| 사천소방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구조대책 수립·조정</li> <li>○ 긴급구조 및 구급업무 총괄지휘·통제</li> <li>○ 긴급구조 현장 활동계획 집행</li> </ul>   |

# 사 천 시 공 보

제719호

## ② 대형 산불

### □ 현장지휘 구성체계도



# 사 천 시 공 보

제719호

## □ 기관별 임무 및 역할

| 기관별     | 임무 및 역할  |
|---------|--|
| 사천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직원 비상소집</li> <li>○ 전문, 지상, 특별진화대 등 출동조치</li> <li>○ 산불상황에 따른 등급별 기준에 의거 대응 조치</li> <li>○ 경찰, 군부대 등 유관기관 협조요청</li> <li>○ 기동차량, 진화도구 동원 명령 및 출동직원 인솔 현장출동</li> <li>○ 현지 지휘본부에서 진화지휘</li> <li>○ 도 대책본부상황실과 보고체제 유지</li> <li>○ 현장상황에 따라 헬기지원 요청 및 현지 인력, 장비 동원</li> <li>○ 진화대 재편성 및 뒷불감시 책임자 지정</li> <li>○ 지역재난방지 차원에서 유관기관, 단체 등 산불방지협의회 개최 정례화</li> <li>○ 각 지역 유관기관 단체의 협조사항 면밀히 파악 공동대처</li> <li>○ 책임구역 순산 공휴일 산불조심 캠페인실시 협조 등</li> </ul> |
| 읍면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읍·면·동장: 유관기관 협조요청 및 민방위대, 읍면진화대, 라동진화대 동원 출동, 인근 읍면·동 지원 요청</li> <li>○ 보 고: 사천시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li> <li>○ 특별진화대장: 특별진화대 인솔 출동</li> </ul>  |
| 사천경찰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불가해자 특히 방화혐의자 검거 및 검거사항 적극홍보</li> <li>○ 산불발생시 경찰장비(헬기 등)지원 및 교통통제 등</li> <li>○ 무단입산자 단속 및 범법자 색출 협조</li> <li>○ 경찰서, 시·군간 산불방지 협조체제 유지 강화</li> <li>○ 지·파출소 및 도서, 오지, 초소근무자에 대한 산불조심계도 및 신속 진화지도</li> <li>○ 순찰차를 이용 방화우려지, 산불 취약지 야간순찰 협조</li> </ul>   |
| 사천교육지원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급 학교를 통한 산불조심 계도 교육</li> <li>○ 어린이 불장난 금지 지도교육 및 학생을 통한 학부모 산불조심 계도</li> <li>○ 각 급 학교에 어린이 불장난 금지에 대한 주의공문 시달 및 수시 지도(주민계도 활동 등)</li> <li>○ 중고생 산림연접지 산불요인 제거사업 봉사활동 인정</li> </ul>  |

# 사 천 시 공 보

제719호

| 기관별            | 임무 및 역할   |
|----------------|---|
| 8962부대<br>4대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불예방활동 적극 지원</li> <li>○ 군 헬기 등 장비와 병력(예비군포함) 동원 진화지원</li> <li>○ 군주도 작전지역 산불 자체예방 및 책임 진화</li> <li>○ 군항공기 운행 중 발견된 산불은 가까운 관제탑을 통하여 관할서 연락</li> <li>○ 사격장 주변 방화선설치 및 보수 등 예방대책 강구</li> <li>○ 사격훈련중 산불발생시 조기진화 및 부대장 책임 진화</li> <li>○ 군 작전 관련 산불피해 배상(보상) 철저 이행</li> <li>○ 산불위험 기간 중 사격훈련 중지(2~4월)</li> <li>○ 산불피해에 대한 배상책임 사전 주지</li> </ul> |
| 진주기상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상관측상황 통보협조</li> <li>○ 기상예보시 산불위험주의 안내 및 주간 기상개황(예보) 통보</li> </ul>   |
| 우 체 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지대 소재 통신중계소 등에서 발견한 산불 인근 기관에 통보</li> <li>○ 집배원의 산불예방 신고 및 산불조심 계도</li> </ul>   |
| 산림조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 임직원 및 리 산림계원을 산불감시 및 진화대원으로 조직</li> <li>○ 자율 윤번 순찰 및 진화 유도</li> </ul>   |
| 한려해상<br>관리사무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원관리사무소 자체 산불진화대 조직 및 진화장비 확보</li> <li>○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등산로 조정시 소재 해당시군과 사전 협의</li> <li>○ 산불계도 홍보물(깃발, 현수막, 안내판 등) 집중 설치</li> <li>○ 공원구역내 취약지 감시원 집중배치</li> <li>○ 입장권에 “산불조심” 계도문 삽입 및 앰프방송</li> <li>○ 공원 구역 내 산불의 책임진화체제 강구(공원, 인접 시·군 및 국유림관리소에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li> </ul>  |
| 함양국유림<br>관리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청소관 국유림내 산불예방 및 진화전담</li> <li>○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시 유관기관과 긴밀한 상호 협조체제 유지</li> <li>○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등산로 조정시 소재 해당시군과 사전 협의</li> </ul>   |
| 한국전력공사<br>경남지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압선에 의한 산불발생 차단 및 산불발견 신고</li> <li>○ 산불통합지휘본부 현장 전력 공급 협조</li> </ul>   |
| KT<br>지역별 지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불통합지휘본부 현장 유무선 통신 협조</li> <li>○ 산불발견 신고 및 산불조심 계도</li> </ul>  |
| 운수 및<br>관광회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속,관광,시외버스 차내 및 대합실 방송이용 산불조심 계도</li> <li>○ 운행중인 차에서 담뱃불을 버리지 않도록 계도</li> <li>○ 운행중 발견된 산불은 가까운 관공서에 통보</li> </ul>   |

# 사 천 시 공 보

제719호

## ③ 가축전염병

### □ 현장방역 실무체제도



| 상황총괄반   | 방역대책반  | 통제초소반  | 환경경비반  | 인체감염대책반   | 홍보반   | 협업지원반  |
|---|--|--|--|---|---|--|
| 농축산과  | 농축산과   | 농축산과, 미래농업과, 재난안전과, 행정과  |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환경보호과   | 보건위생과 (보건소)   | 공보감사담당관 (홍보실)   | 재난안전과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황실 및 지대본 운영</li> <li>○상황판단회의 기획 (단체장 주재) 및 대처계획 수립</li> <li>○실무반 애로사항 청취조정</li> <li>○일일상황보고</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생농장 사람·가축 처럼에 대한 출입통제, 소독 등 차단방역 실시</li> <li>○관내 축산농가 일제 소독 및 예찰 활동 실시</li> <li>○의심축 발견시 신속한 신고체계 능가 교육 및 홍보</li> <li>○축산농장, 작업장 등 축산 종사자에 대한 방역 교육</li> <li>○소독약품 등 비상방역 물자 현황 파악 및 확보</li> <li>○방역대책수립</li> <li>○살처분·매몰 총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동 통제 초소 · 가점소독시설 설치 및 운영</li> <li>○현장방역초소 근무자 편성 등 인력 관리 지원</li> <li>○가점소독시설 및 이동통제초소 운영실태 점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물 위치 선정·매물 지원·감독</li> <li>○살처분 매몰지 사후 환경관리 기술 지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축방역요원, 살처분 인력 등에 인체감염 방지를 위한 역학조사 및 예방조치계획 수립·시행</li> <li>○살처분 및 가축 매몰 인력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언론기관 대응 등 대 국민 행동요령 및 주의 사항 홍보</li> <li>○소비자 불안심리 해소를 위한 정보 제공</li> <li>○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방역교육 및 지도 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난 관리기금, 특교세 예산·지원요청 등</li> <li>○유관기관 협업관리 총괄(소방·경찰·군부대·한전 등)</li> </ul> |

### ○ 근무시간

- 24시간 근무(8:00부터 익일 8:00)

※ 상황유지 및 보고: 각 반별 반장은 매일상황을 8:00까지 본부장에게 보고

# 사 천 시 공 보

제71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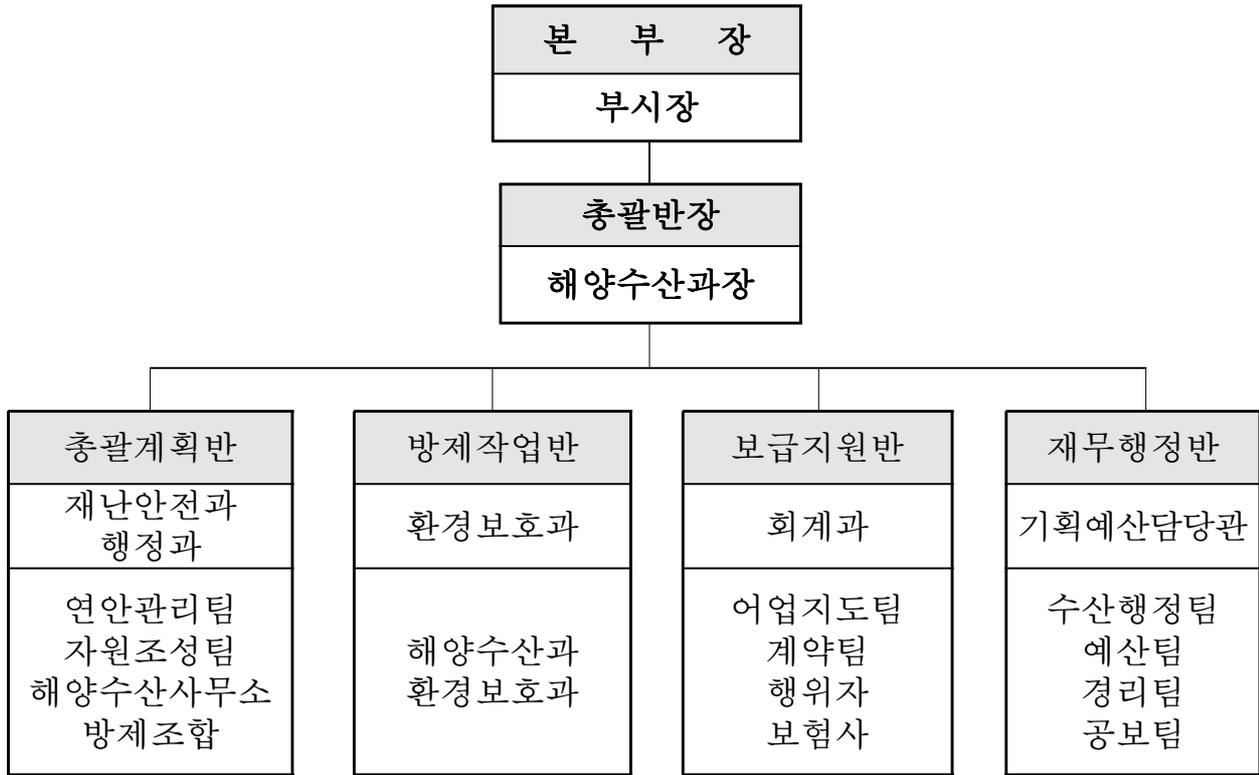
## □ 가축질병 방역대책본부 반별 임무

| 구 성 |                                    | 주 요 임 무   |
|-----|------------------------------------|---|
| 지휘부 | 본부장                                | ○ 시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의 업무 총괄   |
|     | 차 장                                | ○ 부시장이 되며, 본부장 보좌 및 비상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
|     | 총괄조정관                              | ○ 안전도시국장이 되며, 본부장 및 차장 보좌 및 비상단계에 상황 업무 보좌  |
|     | 통제관                                | ○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본부장 및 차장 보좌,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비상단계에서 실무반 업무 총괄   |
|     | 담당관                                | ○ 농축산과장이 되며, 실무반 업무 총괄·운영   |
| 실무반 | 상황총괄반<br>(농축산과)                    | ○ 상황실 및 지대본 운영<br>○ 상황판단회의 개최(단체장 주재) 및 대처계획 수립<br>○ 실무반 애로 사항 청취·조정<br>○ 일일상황보고  |
|     | 방역대책반<br>(농축산과)                    | ○ 발생농장 사람가축차량에 대한 출입통제 소독 등 차단방역 실시<br>○ 관내 축산농가 일제 소독 및 예찰 활동 실시<br>○ 의심축 발견시 신속한 신고체계 농가교육 및 홍보<br>○ 축산농장, 작업장 등 축산종사자에 대한 방역 교육<br>○ 소독약품 등 비상방역물자 현황 파악 및 확보<br>○ 방역대책수립<br>○ 살처분·매몰 총괄 |
|     | 통제초소반<br>(농축산과, 미래농업과, 재난안전과, 행정과) | ○ 이동통제초소·거점소독시설 설치 및 운영<br>○ 현장 방역초소 근무자 편성 등 인력 관리·장비 지원<br>○ 거점소독시설 및 이동통제초소 운영실태 점검  |
|     | 환경정비반<br>(농축산과, 기술지원과, 환경보호과)      | ○ 매몰 위치 선정·매몰 지원·감독<br>○ 살처분 매몰지 사후 환경관리 기술 지원  |
|     | 인체감염대책반<br>(보건소)                   | ○ 가축방역요원, 살처분 인력 등에 인체감염 방지를 위한 역학조사 및 예방조치계획 수립·시행<br>○ 살처분 및 가축 매몰 인력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   |
|     | 홍보반<br>(공보감사담당관)                   | ○ 언론기관 대응 등 대국민 행동요령 및 주의사항 홍보<br>○ 소비자 불안심리 해소를 위한 정보 제공<br>○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방역교육 및 지도 등  |
|     | 협업지원반<br>(재난안전과)                   | ○ 재난관리기금, 특교세 예산 지원 요청 등<br>○ 유관기관 협업관리 총괄(소방·경찰·군부대·한전 등)  |

# 사 천 시 공 보

제719호

- ④ 대규모 해양오염
- 현장 실무체계도



- 반별 임무와 역할

| 반별                    | 임무와 역할   |
|-----------------------|--|
| 총<br>괄<br>계<br>획<br>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안방제세력 총괄 행동조치</li> <li>○ 해안방제 상황 도청 보고 및 관계기관 전파</li> <li>○ 해안현장 지휘소장이 방제 조치한 사항을 평가계획반에 통보</li> <li>○ 관계기관, 단·업체 협조 및 지원 요청</li> <li>○ 오염상황 및 해안방제 조치사항을 시차별로 기록 유지</li> <li>○ VIP 등 귀빈 방문에 대비한 상황보고 브리핑 준비</li> <li>○ 지역방제대책협의회 및 관계기관, 단·업체 협조지원체제 확립</li> <li>○ 해양경찰청 방제대책본부와 상황유지 및 정보교환</li> <li>○ 자원봉사자 작업배치</li> <li>○ 해안오염 상황도 작성 보고</li> <li>○ 주민동향 파악</li> <li>○ 해당 처리업무의 각 대책반 통보</li> </ul> |

# 사 천 시 공 보

제719호

| 반별                    | 임무와 역할   |
|-----------------------|--|
| 방<br>제<br>작<br>업<br>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경찰청 방제대책본부와 지원 협조체제 유지</li> <li>○ 해안특성에 적합한 방제방법 등 검토시행</li> <li>○ 방제세력 해안방제구역 설정 및 방제방법 선정 제시 등 방제계획 수립</li> <li>○ 방제기술지원단 사고현장 지원 검토 및 자문요청</li> <li>○ 유출유 표착상태 및 해안방제 진척상황에 따른 적정한 방제작업 검토 시행</li> <li>○ 해안방제지역의 교통 통제</li> </ul>  |
| 보<br>급<br>지<br>원<br>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제장비, 중장비, 기자재, 연료, 주·부식, 위생용 소모품 등의 동원·보급·지원 총괄 관리</li> <li>○ 필요시 현장 보급지원반 및 방제기자재 임시 보급소 설치</li> <li>○ 장비, 기자재의 수습상황을 기록 유지하고, 부족이 예상되는 물품 확보</li> <li>○ 수거된 폐유, 폐기물의 임시저장소 설치 및 최종처리 적법여부 지도·감독</li> <li>○ 자원봉사자 접수 및 관리</li> <li>○ 해당 처리업무의 각 대책반 통보</li> </ul>   |
| 재<br>무<br>행<br>정<br>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예산의 방제자금 확보 및 집행</li> <li>○ 현장 방제활동상황 촬영(비디오, 디지털 카메라)</li> <li>○ 보도자료 작성배부 및 보도내용 녹취, 스크랩</li> <li>○ 오보 및 비난보도사항 진상파악 시정</li> <li>○ 기자실 운영 등 취재 편의 제공</li> <li>○ 해안방제지휘본부의 사무실 운영, 방제조치 요원의 후생 등 행정지원</li> <li>○ 자원봉사자의 방제작업 배치 및 숙식 등 총괄 관리</li> <li>○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도자료와 해안방제상황 실시간 업데이트</li> <li>○ 해안오염상황도 작성 및 해안방제상황판 기록 유지</li> <li>○ 보험가입현황 및 선주 보상능력 파악</li> <li>○ 해당 처리업무의 각 대책반 통보</li> </ul> |

# 사 천 시 공 보

제 719 호

## (2)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 건명(규정명칭)                          | 주요내용   | 제정일자          | 비고 |
|-----------------------------------|--|---------------|----|
|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  | 1997. 1. 8.   |    |
|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 사천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  | 1998.5. 27.   |    |
| 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 2004. 10. 5.  |    |
| 사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등   | 2005. 6. 7.   |    |
| 사천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총괄·조정  | 2005. 10. 25. |    |
| 사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 규정  | 2006. 2. 3.   |    |
|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2006. 2. 3.   |    |
| 사천시 재난 예·경보 운영 규정                 | 재난예경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 2006. 6. 30.  |    |
| 사천시 어항 관리조례                       | 「어촌·어항법」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 2006. 12. 26. |    |
| 사천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 2010. 7. 15.  |    |
| 사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2013. 1. 7.   |    |
| 사천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 2013. 3. 29.  |    |
| 사천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안전센터 운영 규정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안전센터의 운영과 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                                | 2013. 11. 22. |    |
| 사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                | 여름철 물놀이이로부터의 안전확보 및 주민안전의식 고취  | 2014. 2. 26.  |    |

# 사 천 시 공 보

제 719 호

| 건명(규정명칭)                            | 주요내용  | 제정일자          | 비고 |
|-------------------------------------|---|---------------|----|
|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조례             |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사항 규정                                    | 2014. 2. 26.  |    |
| 사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2015. 12. 3.  |    |
| 사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                   |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 지원                      | 2016. 7. 8.   |    |
| 사천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 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2017. 1. 31.  |    |
| 사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2017. 12. 28. |    |
| 사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에 관한 지원 기준                               | 2018. 5. 4.   |    |
| 사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요청사항 등을 심의   | 2019. 9. 10.  |    |
| 사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미세먼지의 예방과 저감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 2019. 10. 10. |    |
| 사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2020. 4. 29.  |    |
|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2020. 11. 5.  |    |

##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반시설의 관리

| 시설유형 | 시설명 | 시설현황 | 관리주체 | 지정일자 | 조치사항 | 비고 |
|------|-----|------|------|------|------|----|
| 해당없음 |     |      |      |      |      |    |

※ 관리기관에 관계없이 관할지역에 있는 국가기반시설에 대하여 공시

# 사 천 시 공 보

제719호

##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점검·관리

### ① 재난방지시설의 정비

| 사업명                    | 위치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사업비<br>(백만원) | 정비<br>목적 | 부서명         |
|------------------------|-------------|--------------------------------|-------------|--------------|----------|-------------|
| 계                      |             | 20개                            |             | 45,947       |          |             |
| 재해위험지정비                | 사천시<br>전역   | 재해위험지 정비                       | 2020. 1~ 12 | 700          | 재해<br>예방 | 재난안전과       |
| 재해위험지역정비               | 만마 외<br>3개소 | 재해위험지구 2개소,<br>급경사지 2개소        | 2020. 1~ 12 | 5,260        | 재해<br>예방 | 재난안전과       |
|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            | 사천시<br>전역   | 신설 1개소, 교체 7개소                 | 2020. 1~ 12 | 465          | 재해<br>예방 | 재난안전과       |
| 재난취약지역<br>무선방송시설 확충    | 사천시<br>전역   | 28개 마을, 648세대                  | 2020. 1~ 12 | 520          | 재해<br>예방 | 재난안전과       |
| 도시배수펌프장 관리             | 사천시<br>전역   | 원격제어 구축 7개소, 비<br>상발전기 설치 2개소  | 2020. 1~ 12 | 319          | 재해<br>예방 | 재난안전과       |
| 농업용수개발                 | 사천시<br>전역   | 농업용 관정개발 등                     | 2020. 1~ 12 | 305          | 재해<br>예방 | 건설과         |
| 수리시설개선                 | 사천시<br>전역   | 용배수로, 저수지 등 수<br>리시설 개보수       | 2020. 1~ 12 | 5,797        | 재해<br>예방 | 건설과         |
| 재해위험저수지<br>정비          | 사천시<br>전역   | 재해위험저수지 개보수                    | 2020. 1~ 12 | 128          | 재해<br>예방 | 건설과         |
| 하천 및 소하천<br>정비         | 사천시<br>전역   | 하천 및 소하천 정비                    | 2020. 1~ 12 | 9,818        | 재해<br>예방 | 건설과         |
| 소규모<br>배수개선사업          | 사남면         |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1<br>개소             | 2020. 1~ 12 | 500          | 재해<br>예방 | 건설과         |
| 소규모 수도시설<br>개량사업       | 사천시<br>전역   | 물탱크 교체·철거, 지하수<br>상부 보호시설 설치   | 2020. 1~ 12 | 344          | 재해<br>예방 | 건설과         |
| 방조제 개보수                | 사천시<br>전역   | 노후 방조제 개보수                     | 2020. 1~ 12 | 811          | 재해<br>예방 | 건설과         |
| 사방시설 설치 및<br>개보수       | 사천시<br>전역   | 사방댐 등 사방시설 설<br>치 및 개보수        | 2020. 1~ 12 | 154          | 재해<br>예방 | 녹지공원과       |
| 터널·교량 안전점검<br>및 관리     | 사천시<br>전역   | 삼천포대교, 각산터널 등<br>시설물 안전점검 및 관리 | 2020. 1~ 12 | 709          | 재해<br>예방 | 도로과         |
| 도로 낙석방지시설<br>설치        | 시도21호<br>선  | 도록 낙석방지시설 설치<br>1식             | 2020. 1~ 12 | 170          | 재해<br>예방 | 도로과         |
| 어항시설 및 레저용<br>기반시설 정비  | 사천시<br>전역   | 소규모어항시설 및 레저<br>용 기반시설 정비      | 2020. 1~ 12 | 1,516        | 재해<br>예방 | 해양수산과       |
| 어촌정주시설확충               | 관내          | 물량장 정비 등                       | 2020. 1~ 12 | 733          | 재해<br>예방 | 해양수산과       |
| CCTV 관제센터<br>관리 및 운영   | 사천시<br>전역   | CCTV 교체 및 신설                   | 2020. 1~ 12 | 5,888        | 재해<br>예방 | 재난안전과       |
| 해수욕장 안전<br>환경개선사업      | 남일대<br>해수욕장 | 해수욕장 안전<br>환경개선사업              | 2020. 6~ 8. | 35           | 재해<br>예방 | 해양수산과       |
| 하수관로 및 공공하수<br>처리시설 정비 | 사천시<br>전역   | 하수관로 및 공공하수처<br>리시설 정비         | 2020. 1~ 12 | 11,775       | 재해<br>예방 | 상하수도<br>사업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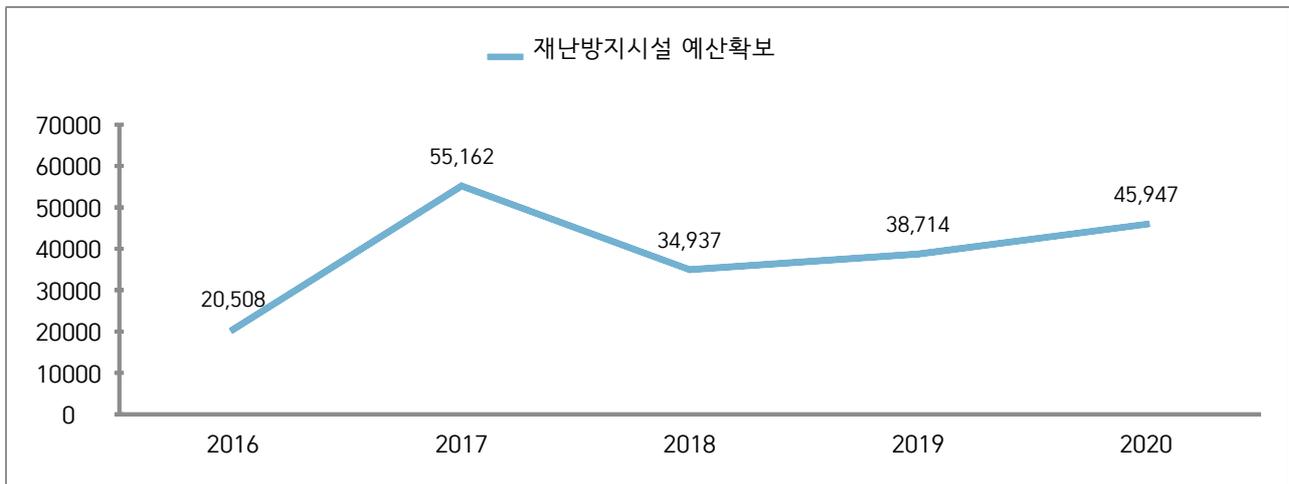
# 사 천 시 공 보

제719호

## ② 연도별 비교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재난방지시설 예산확보 | 20,508 | 55,162 | 34,937 | 38,714 | 45,947 |



### ▷ 재난방지시설 예산확보의 증감원인

- 매년 재난에 대비하여 재해위험지를 사전조사하고,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체계적 정비 및 복구 등에 따른 예산집행으로 증감원인 발생

###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및 장비·인력의 지정

- ①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 가) 방재물자

| 구분 | 계      | 오일펜스 (km) | 유흡착제 (BOX) | 흡착물 (BOX) | 유처리제 (L) | 중화제 (KL) | 소석회 (ton) | 가성소다 (ton) |
|----|--------|-----------|------------|-----------|----------|----------|-----------|------------|
| 총계 | 894.36 | 0.36      | 90         | 30        | 774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719호

## ㉠ 의료시설

| 구분  | 개소 | 의사 | 간호사 | 구급차    | 병상수   | 영안실 |
|-----|----|----|-----|--------|-------|-----|
| 합 계 | 13 | 81 | 332 | 20     | 2,911 | 9   |
| 병 원 | 12 | 80 | 296 | 11     | 2,911 | 4   |
| 보건소 | 1  | 1  | 36  | 1      | -     | -   |
| 기 타 | -  | -  | -   | 8(소방서) | -     | 5   |

## ㉡ 수용시설

| 구분 | 합 계 |        | 학 교 |        | 마을회관 |       | 경로당 |      | 관공서 |      | 기 타 |      |
|----|-----|--------|-----|--------|------|-------|-----|------|-----|------|-----|------|
|    | 개소  | 수용인원   | 개소  | 수용인원   | 개소   | 수용인원  | 개소  | 수용인원 | 개소  | 수용인원 | 개소  | 수용인원 |
| 총계 | 73  | 24,651 | 31  | 22,391 | 25   | 1,117 | 15  | 603  | 1   | 421  | 1   | 119  |

## ㉢ 지진대피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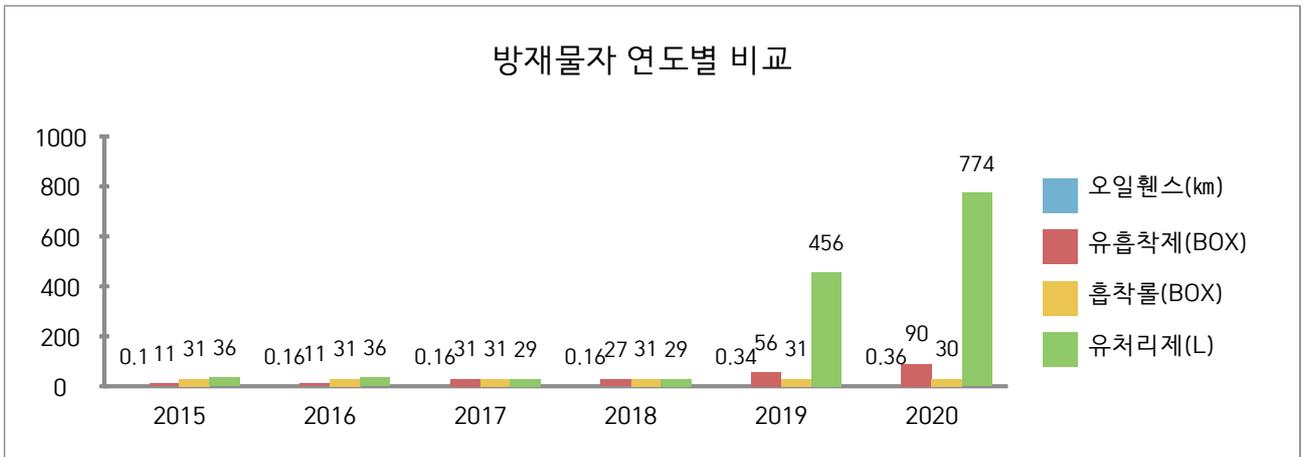
| 구분 | 합 계 |        | 학교 운동장 |       | 공원 |        | 체육시설 |        |
|----|-----|--------|--------|-------|----|--------|------|--------|
|    | 개소  | 수용인원   | 개소     | 수용인원  | 개소 | 수용인원   | 개소   | 수용인원   |
| 총계 | 20  | 69,926 | 16     | 6,383 | 2  | 51,210 | 2    | 12,333 |

## ㉣ 방재물자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 방재물자 종류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오일펜스(km)  | 0.16 | 0.16 | 0.16 | 0.34 | 0.36 |
| 유흡착제(BOX) | 11   | 31   | 27   | 56   | 90   |
| 흡착롤(BOX)  | 31   | 31   | 31   | 31   | 30   |
| 유처리제(L)   | 36   | 29   | 29   | 456  | 774  |
| 중화제(kl)   | -    | -    | -    | -    | -    |
| 소석회(ton)  | -    | -    | -    | -    | -    |
| 가성소다(ton) | -    | -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 719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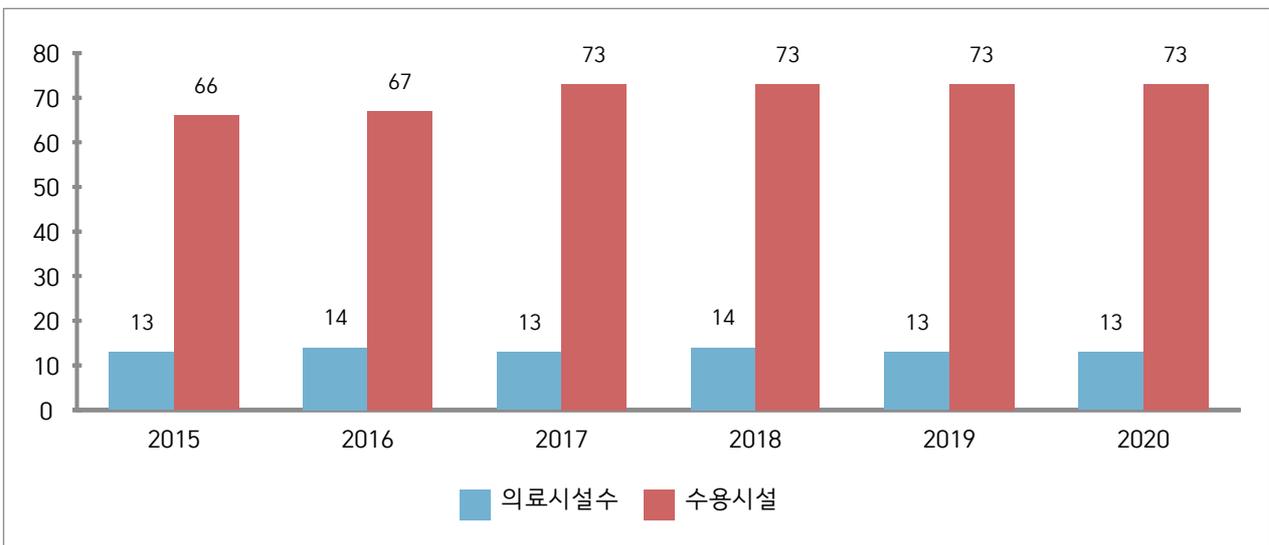


▷ 방재물자 확보의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설명

- 방재훈련 및 작업 시 사용 및 추가구입 등으로 인한 보관량 증감

㉢ 의료시설 및 수용시설 연도별 비교

| 구분    |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의료시설수 |      | 13     | 14     | 13     | 14     | 13     | 13     |
| 수용시설  | 개소   | 66     | 67     | 73     | 73     | 73     | 73     |
|       | 수용인원 | 11,807 | 10,002 | 14,431 | 14,431 | 14,431 | 24,651 |



▷ 의료 및 수용시설 지정의 증감원인

- 의료시설 및 수용시설 수는 전년과 동일함.

# 사 천 시 공 보

제 719 호

## (라) 장비 및 인력의 지정

- ① 장비지정
- 가 구조·구급

| 구분 | 계   | 구급차 | 에어텐트 | 지계차 | 지브크레인 | 무전기 |
|----|-----|-----|------|-----|-------|-----|
| 총계 | 425 | 1   | 0    | 18  | 11    | 395 |

### 나 복구장비

| 구분 | 계  | 고소<br>작업차 | 용접기 | 양수기 | 수중<br>펌프 | 엔진<br>펌프 | 전기톱 | 유개<br>트럭 | 크레인<br>블이<br>트럭 | 궤도형<br>굴착기 |
|----|----|-----------|-----|-----|----------|----------|-----|----------|-----------------|------------|
| 총계 | 94 | 4         | -   | -   | 19       | 53       | 3   | 1        | 4               | 10         |

### 다 의료방역·재난현장 환경정비

| 구분 | 계     | 쓰레기<br>수거용 트럭 | 압력 또는<br>증기청소기 | 가스마스크 | 오염제거기 |
|----|-------|---------------|----------------|-------|-------|
| 총계 | 4,739 | 22            | 3              | 4,536 | 178   |

### 라 제설

| 구분 | 계  | 덤프 | 스키드로더 | 굴삭기 | 살포기 | 트럭 |
|----|----|----|-------|-----|-----|----|
| 총계 | 86 | 26 | 1     | -   | 5   | 54 |

### 마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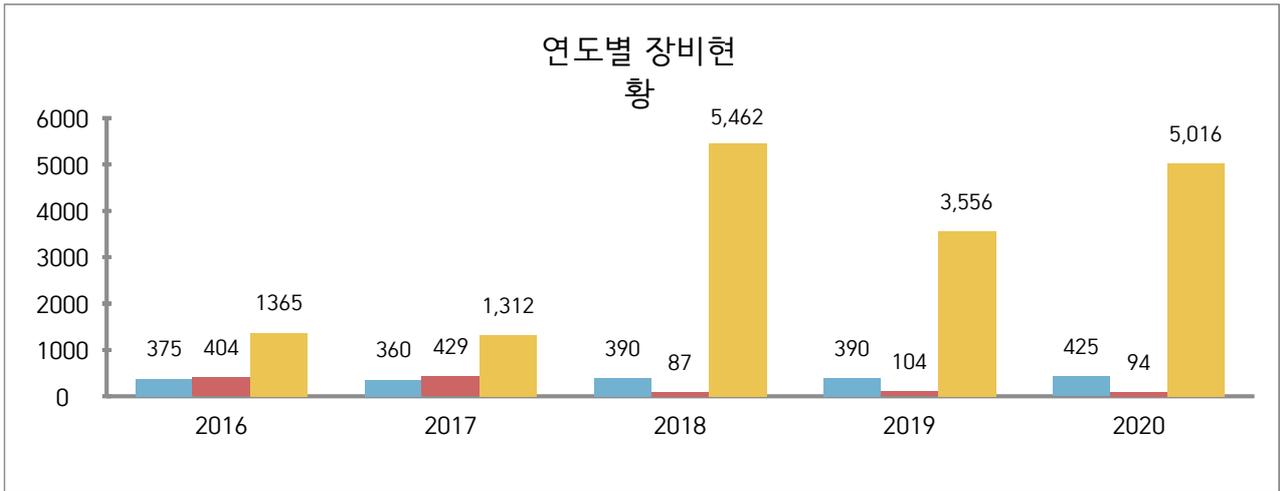
| 구분 | 계   | 등짐<br>펌프 | 소방용<br>펌프 | 지브<br>크레인 | 유개트럭 | 탱크<br>트럭 | 유압구조<br>장비셀 |
|----|-----|----------|-----------|-----------|------|----------|-------------|
| 총계 | 191 | 165      | 10        | 10        | 2    | 4        | -           |

### 바 연도별 비교

| 구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구조장비 | 375   | 360   | 390   | 390   | 425   |
| 복구장비 | 404   | 429   | 87    | 104   | 94    |
| 기타장비 | 1,365 | 1,312 | 5,462 | 3,556 | 5,016 |

# 사 천 시 공 보

제 719 호



## ▷ 장비지정의 증감원인

- 장비의 폐기 및 지정내역 변경에 따라 증감요인 발생

② 인력지정

㉠ 기술인력

| 구분    | 계   | 토목 | 건축 | 환경 | 전기 | 가스 | 통신 | 화공 | 기타 |
|-------|-----|----|----|----|----|----|----|----|----|
| 인원(명) | 257 | 82 | 67 | 26 | 47 | 7  | 14 | 9  | 5  |

㉡ 기능인력

| 구분 | 계   | 전기공 | 기계공 | 통신공 | 중기 운전 | 중기 정비 | 배관공 | 승강기 안전 | 항공기 정비 | 기타 | 비고 |
|----|-----|-----|-----|-----|-------|-------|-----|--------|--------|----|----|
| 인원 | 707 | 47  | 15  | 10  | 379   | 222   | 12  | 1      | 8      | 13 |    |

㉢ 자원봉사단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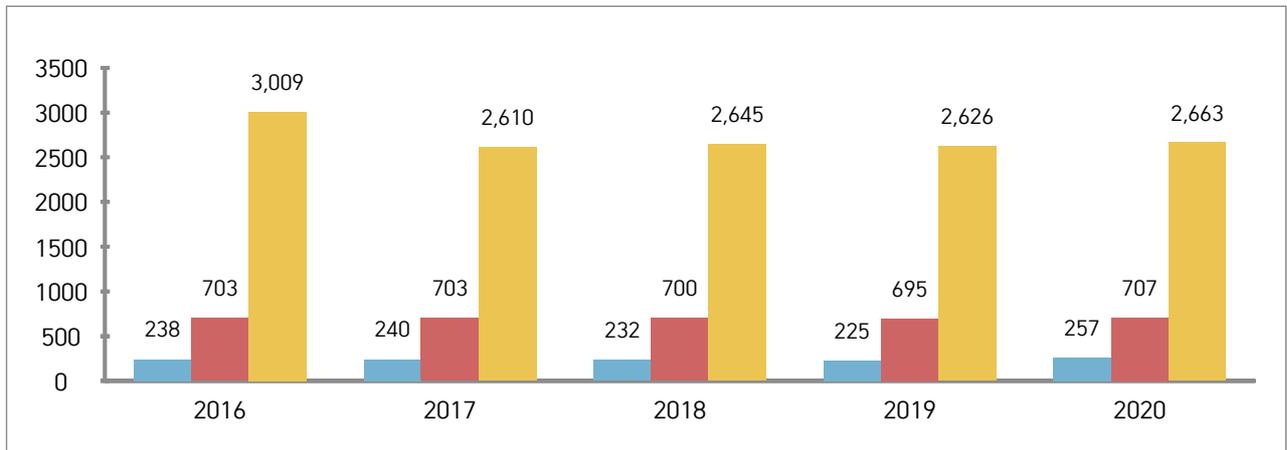
| 구분 | 계     | 봉 사 단 체 |         |        |        |         |        |        | 기 타        |          |          |
|----|-------|---------|---------|--------|--------|---------|--------|--------|------------|----------|----------|
|    |       | 적십자 봉사대 | 새마을 부녀회 | 해병 전우회 | 모범운전자회 | 새마을 협의회 | 자원 봉사회 | 여성 협의회 | 주부 민방위 기동대 | 지역자율 방재단 | 시민안전 봉사대 |
| 인원 | 2,663 | 377     | 326     | 89     | 131    | 304     | 966    | 16     | 183        | 91       | 180      |

# 사 천 시 공 보

제 719 호

## ㉔ 연도별 비교

| 구 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기술인력              | 238   | 240   | 232   | 225   | 257   |
| 기능인력              | 703   | 703   | 700   | 695   | 707   |
| 자원봉사단체,<br>특수단체 등 | 3,009 | 2,610 | 2,645 | 2,626 | 2,663 |



### ▷ 인력지정의 증감원인

- 안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 제고 및 기존 인력의 고령화에 따른 증감 요인 발생

### (3)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가)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점검·평가 결과

- ① 대상: 재난관리 실태점검, 소화천정비, 여름철 물놀이 실태 확인, 수해복구사업 추진, 재해구호물자, 폭염대비 등
- ② 점검·평가 결과

| 점검·평가명              | 점검·평가 일시  | 점검·평가 주관기관 | 점검·평가 결과 | 비고 |
|---------------------|-----------|------------|----------|----|
| 2020 재난관리평가         | 2020. 1.  | 행정안전부      | 우수       |    |
| 2020 국민안전교육<br>실태점검 | 2020. 11. | 행정안전부      | 우수       |    |
| 2020 하천정비사업<br>평가   | 2020. 12. | 경상남도       | 우수       |    |

# 사 천 시 공 보

제 719 호

## (나)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

### ①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현황

| 시설물별      | 내진설계대상①<br>(동수, 시설물수) | 내진설계 적용<br>+내진성능확보<br>+내진보강 실적<br>② (전년도까지) | 2020 내진보강 실적 |                | 내진율(%<br>(②+③)/①<br>×100 |
|-----------|-----------------------|---|--------------|----------------|--------------------------|
|           |                       |   | 동수(시설수)<br>③ | 투자사업비<br>(백만원) |                          |
| 계         | 149                   | 82  | 3            | 280            | 57%                      |
| 공공건축물     | 36                    | 33  | 1            | 259            | 94%                      |
| 도로시설물     | 90                    | 39  |              |                | 43%                      |
| 수도시설      | 14                    | 1   | 2            | 21             | 22%                      |
| 폐기물 매립시설  | 1                     | 1   |              |                | 100%                     |
| 공공하수 처리시설 | 5                     | 5   |              |                | 100%                     |
| 궤도 및 삭도   | 3                     | 3   |              |                | 100%                     |

### ②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 구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내진율 | 48%  | 53%  | 54%  | 55%  | 57%  |



#### ▷ 내진실적 및 내진율 등이 저조한 사유

- 많은 예산 소요되는 사업으로 단기간 내진보강사업 추진 곤란
- 2020년에는 내진보강공사 1개소(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 내진성능평가 4개소 실시(곤명취수장 외 3개소\*)

\* 내진성능확보: 2개소

# 사 천 시 공 보

제719호

## ③ 재난안전대책본부·종합상황실 내진대책 추진

| 구 분            | 구조체 내진보강 여부 | 지대본·상황실       |                           | 비고 |
|----------------|-------------|---------------|---------------------------|----|
|                |             | 바닥 이중마루 보강 여부 | 전력과 통신 등 관련설비 면진테이블 설치 여부 |    |
| 지역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 보강          | 보강            | 설치                        |    |

## (다)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지정 및 관리

### ① 지구별 긴급대피장소 및 표지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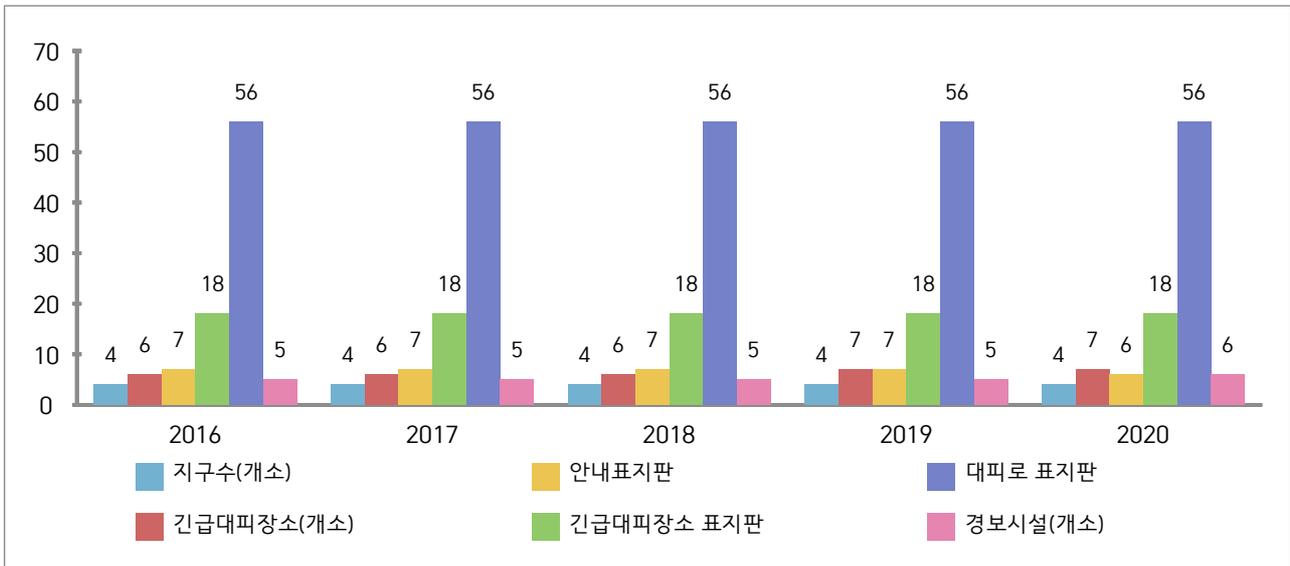
| 지구별               | 긴급 대피장소 (개소)                       | 표지판(개) |        |          |         | 경보 시스템 (개소) |
|-------------------|------------------------------------|--------|--------|----------|---------|-------------|
|                   |                                    | 계      | 안내 표지판 | 대피장소 표지판 | 대피로 표지판 |             |
| 계                 | 7개소                                | 86     | 6      | 18       | 56      | 6           |
| 동서금동 팔포해안 상가지구    | 노산초등학교 (1개소)                       | 25     | 2      | 6        | 15      | 2           |
| 향촌동 남일대 해수욕장 상가지구 | 모레마을회관 (1개소)                       | 14     | 1      | 3        | 9       | 2           |
| 동서동 서부해안 상가지구     | 성결교회, 동서어린이집, 대방초등학교, 삼천포초등학교(4개소) | 41     | 2      | 7        | 30      | 1           |
| 동서동 신수동 지구        | 신수도 초등분교 (1개소)                     | 6      | 1      | 2        | 2       | 1           |

### ②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지정 및 관리 연도별 비교

| 구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 정비 사업비 집행실적(천원) | -          | -    | -    | -    | -    |    |
| 지구수(개소)         | 4          | 4    | 4    | 4    | 4    |    |
| 긴급대피장소(개소)      | 6          | 6    | 6    | 7    | 7    |    |
| 표지판             | 안내표지판      | 7    | 7    | 7    | 7    | 6  |
|                 | 긴급대피장소 표지판 | 18   | 18   | 18   | 18   | 18 |
|                 | 대피로 표지판    | 56   | 56   | 56   | 56   | 56 |
| 경보시설(개소)        | 5          | 5    | 5    | 5    | 6    |    |

# 사 천 시 공 보

제 719 호



## (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현황

### ① 재난관리기금 적립

(단위: 백만원)

| 법정적립기준 | 당해연도 확보기준액(①) | 확보액(②) | 확보율 (②/①×100) |
|--------|---------------|--------|---------------|
| 739    | 739           | 739    |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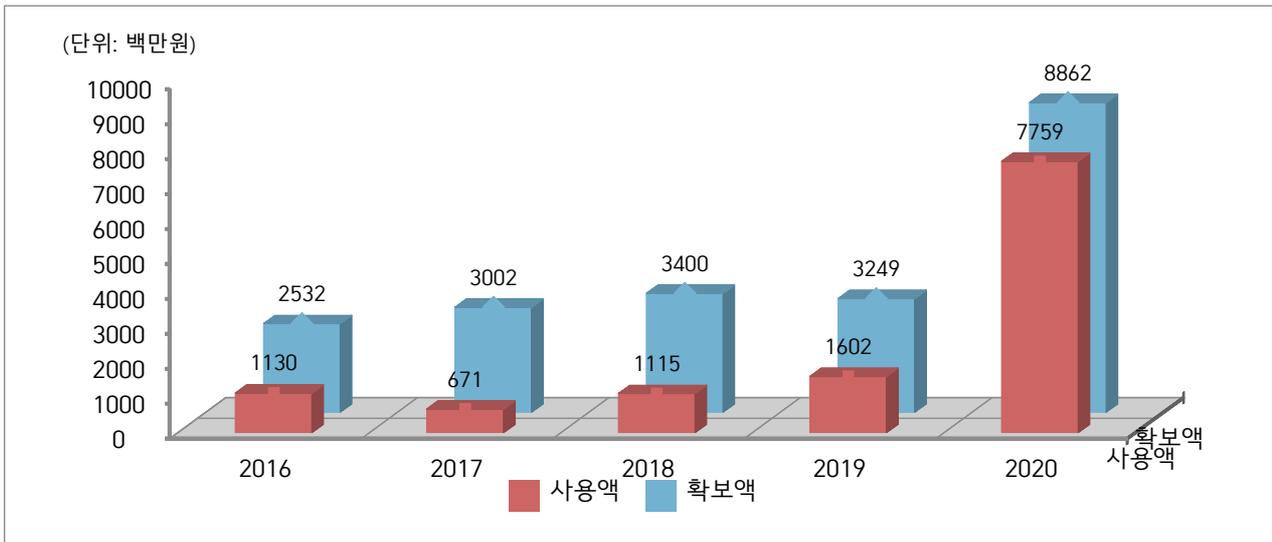
### ②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단위: 백만원)

| 구분  |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확보액 |                              | 2,532 | 3,002 | 3,400 | 3,249 | 8,862 |
| 사용액 | 소계                           | 1,130 | 671   | 1,115 | 1,602 | 7,759 |
|     |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 248   | 82    | 46    | 111   | 7,225 |
|     | 재해저감시설설치 및 보수보강              | 882   | 589   | 995   | 1,491 | 534   |
|     |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긴급조치           | 0     | 0     | 74    | 0     | 0     |
|     |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 0     | 0     | 0     | 0     | 0     |

# 사 천 시 공 보

제 719 호



## ▷ 재난관리기금 확보 및 사용액의 증감원인

- 코로나19의 전국적 유행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 및 풍수해, 미세먼지, 폭염, 한파 등 각종 재난 대응을 위한 대책사업 추진

## (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의5에 따른 현장조치행동매뉴얼 작성·운영 현황

### ① 사천시 행동매뉴얼 작성·운영 등 총괄 현황

| 구 분  | 재난유형별(행정안전부)           | 비치여부 |
|------|------------------------|------|
| 자연재난 | 자연재난-01. 풍수해           | ○    |
|      | 자연재난-02. 지진·지진해일       | ○    |
|      | 자연재난-03. 대형 화산폭발       | ○    |
|      | 자연재난-04. 적조            | ○    |
|      | 자연재난-05. 가뭄            | ○    |
|      | 자연재난-06. 조수            | ○    |
|      | 자연재난-07. 우주전파          |      |
|      | 자연재난-08. 조류대발생(녹조)     |      |
|      | 자연재난-09. 산사태           | ○    |
|      | 자연재난-10. 낙뢰            |      |
|      | 자연재난-11. 한파            | ○    |
|      | 자연재난-12. 폭염            | ○    |
|      | 자연재난-13. 자연 우주물체 추락·충돌 |      |

# 사 천 시 공 보

제719호

| 구 분  | 재난유형별(행정안전부)                     | 비치여부 |
|------|----------------------------------|------|
| 사회재난 | 사회재난-01. 산불                      | ○    |
|      | 사회재난-02.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 ○    |
|      | 사회재난-03. 대규모 수질오염                | ○    |
|      | 사회재난-04. 대규모 해양오염                | ○    |
|      | 사회재난-05. 공동구 재난                  |      |
|      | 사회재난-06. 댐 붕괴                    |      |
|      | 사회재난-07. 지하철대형사고                 |      |
|      | 사회재난-08. 고속철도대형사고                |      |
|      | 사회재난-09.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 ○    |
|      | 사회재난-10. 인접국가방사능 누출              |      |
|      | 사회재난-11. 해양선박사고                  | ○    |
|      | 사회재난-12.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 ○    |
|      | 사회재난-13.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 ○    |
|      | 사회재난-14. 교정시설재난 및 사고             |      |
|      | 사회재난-15. 가축질병                    | ○    |
|      | 사회재난-16. 감염병                     | ○    |
|      | 사회재난 -17. 정보통신                   |      |
|      | 사회재난 -18. 금융전산                   |      |
|      | 사회재난 -19. 원전안전                   |      |
|      | 사회재난 -20. 전력                     | ○    |
|      | 사회재난 -21. 원유수급                   |      |
|      | 사회재난 -22. 보건의료                   | ○    |
|      | 사회재난 -23. 식용수                    | ○    |
|      | 사회재난 -24. 육상화물운송                 | ○    |
|      | 사회재난 -25. GPS전파혼신                |      |
|      | 사회재난 -26. 해상 유도선 수난사고            |      |
|      | 사회재난 -27. 공연장 안전사고               |      |
|      | 사회재난 -28. 초미세먼지                  | ○    |
| 주요상황 | 주요상황 -01. 정부중요시설                 |      |
|      | 주요상황 -02. 도로터널                   | ○    |
|      | 주요상황 -03. 항행안전시설장애               |      |
|      | 주요상황 -04. 항공기사고                  | ○    |
|      | 주요상황 -05. 항공운송마비                 |      |
|      | 주요상황 -06. 가스                     | ○    |
|      | 주요상황 - 07. 접경지(댐, 수질오염, 산불, 감염병) |      |
|      | 주요상황 -08 내수면유도선사고                |      |
|      | 주요상황 -09. 황사                     |      |
|      | 주요상황 -10. 위험물사고                  | ○    |
|      | 주요상황 -11. 저수지붕괴                  | ○    |
|      | 주요상황 -12. 문화재                    | ○    |
|      | 주요상황 -13. 학교시설                   |      |
|      | 주요상황 -14. 국방시설                   |      |
|      | 주요상황 -15. 인공우물체 추락·충돌            |      |
|      | 주요상황 -16. 식품·의약품 안전사고            |      |

# 사 천 시 공 보

제719호

## ② 사천시 행동매뉴얼 개정 현황

| 연번 | 행동매뉴얼명                  | 개정일자          | 주요 개정내용  | 비고 |
|----|-------------------------|---------------|--|----|
| 1  | 풍수해 재난 현장조치             | 2020. 12. 30. | 조직 및 관련업무 담당자 수정                                 |    |
| 2  | 지진 현장조치                 | 2020. 12. 4.  | 조직 및 관련업무 담당자 수정                                 |    |
| 3  | 대형화산폭발 현장조치             | 2020. 12. 4.  | 조직 및 관련업무 담당자 수정                                 |    |
| 4  | 적조 현장조치                 | 2020. 12. 9.  |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                                    |    |
| 5  | 가뭄 현장조치                 | 2020. 12. 7.  | 사천시 수원이용 기본현황 반영                                 |    |
| 6  | 조수재난 현장조치               | 2020. 12. 8.  | 조직 및 관련업무 담당자 수정                                 |    |
| 7  | 산사태 현장조치                | 2020. 12. 8.  | 조직 및 관련업무 담당자 수정                                 |    |
| 8  | 한파 현장조치                 | 2020. 12. 30. | 조직 및 관련업무 담당자 수정                                 |    |
| 9  | 폭염 현장조치                 | 2020. 12. 7.  | 조직 및 관련업무 담당자 수정                                 |    |
| 10 | 산불 현장조치                 | 2020. 12. 8.  | 조직 및 관련업무 담당자 수정                                 |    |
| 11 |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br>현장조치    | 2020. 12. 9.  | 조직 및 관련업무 담당자 수정                                 |    |
| 12 | 대규모 수질오염 현장조치           | 2020. 12. 9.  | 표준매뉴얼 개정사항 반영                                    |    |
| 13 |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현장조치         | 2020. 12. 8.  | 조직 및 관련업무 담당자 수정                                 |    |
| 14 |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br>현장조치     | 2020. 12. 10. |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위기징후 감시 및<br>위기정보발령, 재난관리제도 개선사항 반영 |    |
| 15 | 해양선박사고 현장조치             | 2020. 12. 9.  | 조직 및 관련업무 담당자 수정                                 |    |
| 16 | 사업장 대규모 현장조치            | 2020. 12. 7.  | 조직 및 관련업무 담당자 수정                                 |    |
| 17 | 다중밀집건축물 붕괴<br>대형사고 현장조치 | 2020. 12. 30. | 조직 및 관련업무 담당자 수정                                 |    |
| 18 | 가축질병 현장조치               | 2020. 12. 30. | 조직 및 관련업무 담당자 수정                                 |    |
| 19 | 감염병 현장조치                | 2020. 12. 9.  | 조직 및 관련업무 담당자 수정                                 |    |
| 20 | 전력 사고 현장조치              | 2020. 12. 7.  | 표준매뉴얼 개정사항 반영                                    |    |
| 21 | 보건의료 사고 현장조치            | 2020. 12. 7.  | 표준매뉴얼 개정사항 반영                                    |    |
| 22 | 식용수 사고 현장조치             | 2020. 12. 7.  | 조직 및 관련업무 담당자 수정                                 |    |
| 23 | 육상화물운송 현장조치             | 2020. 12. 8.  | 표준매뉴얼 개정사항 반영                                    |    |
| 24 | 초미세먼지 현장조치              | 2020. 12. 8.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변경                              |    |
| 25 | 도로터널 현장조치               | 2020. 12. 9.  | 조직 및 관련업무 담당자 수정                                 |    |
| 26 | 항공기사고 현장조치              | 2020. 12. 8.  | 조직 및 관련업무 담당자 수정                                 |    |
| 27 | 가스 현장조치                 | 2020. 12. 7.  | 조직 및 관련업무 담당자 수정                                 |    |
| 28 | 위험물사고 현장조치              | 2020. 12. 11. | 조직 및 관련업무 담당자 수정                                 |    |
| 29 | 저수지붕괴 현장조치              | 2020. 12. 30. | 조직 및 관련업무 담당자 수정                                 |    |
| 30 | 문화재시설사고 현장조치            | 2020. 12. 7.  | 조직 및 관련업무 담당자 수정                                 |    |

# 사 천 시 공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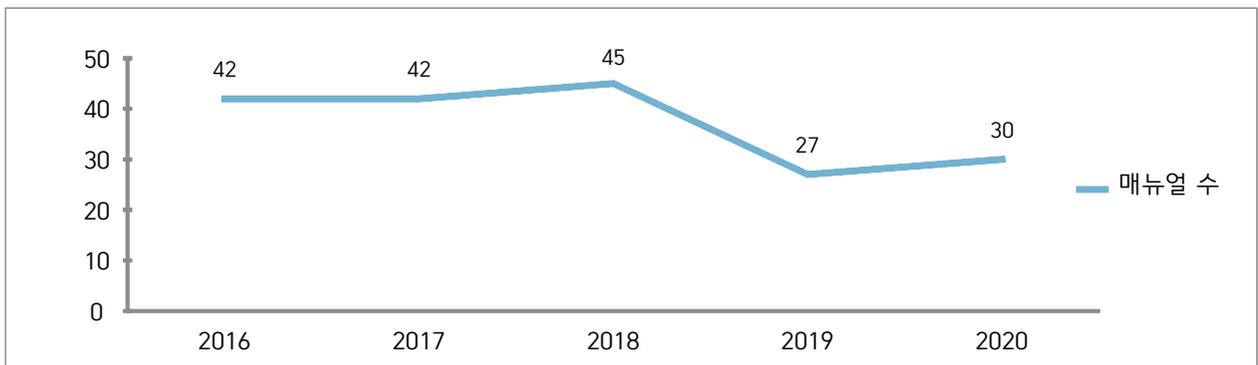
제719호

## ③ 사천시 행동매뉴얼 숙달 훈련 실시 현황

| 행동매뉴얼 명           | 훈련일시        | 주요 훈련내용                            | 훈련결과 개선내용                                   | 비고 |
|-------------------|-------------|------------------------------------|---|----|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담당자 교육 | 2020.05.27. |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임무, 역할 인식 및 표준안 서식 안내 | - 위기관리 매뉴얼 담당자 교육을 통하여 협업반별, 유관기관 등 대응상황 점검 |    |

## ④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 구 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매뉴얼 수 | 31   | 37   | 42   | 42   | 45   | 27   | 30   |



###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

- 2017년부터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함께 재난대응수칙을 마련하고, 표준·실무 매뉴얼을 개정한 이후
- 우리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재난대응 프로세스별 행동절차 위주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수시로 개선하고 있음

## (바)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 ① 2020년 지역안전도 진단 등급: C등급

| 구분    | 방재대책추진 |     |     | 시설점검 정비 |      |         | 총점   | 등급 |
|-------|--------|-----|-----|---------|------|---------|------|----|
|       | 예방     | 대응  | 복구  | 가·감정    | 사업추진 | 유지보수·점검 |      |    |
| 진단 결과 | 8.5    | 9.0 | 4.0 | 8.5     | 8.5  | 12.1    | 58.6 | C  |

※ (안전) A등급 <-> E등급 (위험)

# 사 천 시 공 보

제719호

## ② 연도별 등급 비교

| 구 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등 급 | 10   | 6    | 6    | 4    | 미 실시 | C    |

※ 2019년 이전 (안전) 1등급 <-> 10등급 (위험)

※ 2020년 이후 (안전) A등급 <-> E등급 (위험)

### ▷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등급의 증감원인

- 2020년 이후 진단 지표 및 등급 산출 변화로 증감원인 분석 불가

※ 단순 분석 : 중간 등급 유지

(사)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역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 기관 표창

-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2020년 재난관리평가 결과 “우수”

-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2020년 국민안전교육 실태점검 “우수”

- 경상남도에서 실시하는 2020년 하천정비사업 평가 결과 “우수”

-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미 실시함.

♣ **공시 관련 문의사항 및 의견제출은 재난안전과 재난행정팀  
(☎ 055-831-331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사 천 시 공 보

제719호

## 사천시 공고 제2021 - 413 호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사천시 시세조례」 및 「사천시 시세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5일

사 천 시 장

###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입법예고

#### 1. 자치법규명

- 가.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나. 사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다. 사천시 시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2. 개정이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및 지역감염확산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세제지원 하고, 지방세법 제74조의 개정으로 균등분, 재산분 및 종업원분으로 구분하고 있던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인분,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으로 개편하고, 종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에 대하여 부과하던 균등분의 내용을 사업소분으로 이관하여 규정함.

#### 3. 주요내용

- 가.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 개정(제8조의3)
    - 감면요건확대 : 과세기준일 이후 임대료 인하시 감면가능
    - 감면을 상한 확대 : 기존 50%→75%
  - 코로나19 관련 개인사업자에 대한 감면 개정(제8조의4)

# 사 천 시 공 보

제719호

법인사업자 감면제외 : 법인은 기본세액 세율인하(50만원→20만원)

- 소상공인 가산금 감면 신설(안 제8조의5)

2020년 이후 부과한 시세에 대한 가산금, 증가산금 감면

나. 사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방세 중 주민세의 용어를 변경함(제3장 제1절, 제2절)

“균등분” → “개인분”, “재산분” → “사업소분”

- 개인사업자나 법인은 사업소분으로 과세체계를 변경하여 부과하도록 함.

다. 사천시 시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주민세 용어를 “균등분” → “개인분”, “재산분” → “사업소분” 으로 변경하고 별지 3호서식, 별지 4호서식, 별지 6호서식 및 26호서식 용어 변경

##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5.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세무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864, FAX: 831-6027)

# 사 천 시 공 보

제719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719호

사천시 조례 제 호

##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을 “2021년”으로, “인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 2020년”을 “3개월 이상 계속 하여 인하하는 경우, 2021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임대료 인하율               | 감면율      |
|-----------------------|----------|
| 100분의 5초과 100분의 10이하  | 100분의 10 |
| 100분의 10초과 100분의 15이하 | 100분의 15 |
| 100분의 15초과 100분의 20이하 | 100분의 20 |
| 100분의 20초과 100분의 25이하 | 100분의 25 |
| 100분의 25초과 100분의 30이하 | 100분의 30 |
| 100분의 30초과 100분의 35이하 | 100분의 35 |
| 100분의 35초과 100분의 40이하 | 100분의 40 |
| 100분의 40초과 100분의 45이하 | 100분의 45 |
| 100분의 45초과 100분의 50이하 | 100분의 50 |
| 100분의 50초과 100분의 55이하 | 100분의 55 |
| 100분의 55초과 100분의 60이하 | 100분의 60 |
| 100분의 60초과 100분의 65이하 | 100분의 65 |
| 100분의 65초과 100분의 70이하 | 100분의 70 |
| 100분의 70초과            | 100분의 75 |

제8조의4의 제목 “(코로나19 관련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감면)”을 “(코로나19 관련 개인사업자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방세법」 제75조제1항제3호의 개인”으로, “2020년 8월에 부과하는 균등분 주

# 사 천 시 공 보

제719호

민세”를 “2021년 8월에 신고 납부하는 주민세 사업소분(기본세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5(가산금 등에 대한 감면)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시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 시세에 대한 가산금 등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제1항에서 “가산금 등”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가산금
2. 「지방세징수법」 제31조에 따른 증가산금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일 현재 지방세를 3회(「지방세징수법」 제7조제2항에 따른 3회를 말한다) 이상 체납한 경우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재산세는 제8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 사 천 시 공 보

제719호

규정에 따른다.





2호에 따른 법인

2. 「지방세법」 제75조제1항제

3호에 따른 개인<본조 신설

2020.6.11.>

<신 설>

<삭 제>

제8조의5(가산금 등에 대한 감면)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시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 시세에 대한 가산금 등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제1항에서 “가산금 등”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가산금

2. 「지방세징수법」 제31조에 따른 증가산금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일 현재 지방세를 3회(「지방세징수법」 제7조제2항에 따른 3회를 말한다) 이상 체납한 경우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19호

## 관 련 법 규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 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① ~ ④ 생략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19호

⑥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감면 신청)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6항 및 제126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 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2(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지방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이하 “징수유예”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징수유예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 사 천 시 공 보

제719호

제28조(징수유예 등의 효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의2에 따라 징수유예를 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의2에 따라 징수유예를 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의2에 따라 징수유예를 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지방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교부청구는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라 징수가 유예되었을 경우 그 유예기간은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지방세 또는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을 적용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19호

**제30조(가산금)**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31조(증가산금)** ①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만분의 75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증가산금”이라 한다)을 제30조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은 제30조 단서의 경우와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일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함께 적혀 있을 때에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사 천 시 공 보

제719호

## □ 소상공인기본법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 5명 미만

# 사 천 시 공 보

제719호

사천시 조례 제 호

## 사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시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절(제6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절 개인분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0,000원으로 한다.

제3장제2절의 제목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7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8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19호

## 관 련 법 규

□ 「지방세법」 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
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7. ~ 8. (생략)

제78조(세율)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다.

제80조(과세표준) 사업소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한다.

제81조(세율) ①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본세율
  - 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 나.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 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 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 4) 그 밖의 법인: 5만원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다만, 폐

# 사 천 시 공 보

제719호

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의 세율을 각각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82조(세액계산)** 사업소분의 세액은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액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사업소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사업소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③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이하 이 조에서 “납부서”라 한다)를 발송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납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⑥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19호

사천시 규칙 제 호

## 사천시 시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시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한다.

제5조 중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한다.

제3장제2절의 제목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사업소분)”로,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7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법 제83조제4항”을 “법 제83조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목 중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제목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10% 공제”를 “공제액”으로 하고, 왼쪽하단에 연도 별 연납공제율을 등재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절 <u>균등분</u></p>   | <p>제1절 <u>개인분</u></p>   |
| <p>제5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세(<u>균등분</u>)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 <p>제5조(비과세 관리) -----<br/>-----<br/>-----(<u>개<br/>인분</u>) -----<br/>-----<br/>-----.</p>  |
| <p>제2절 <u>재산분</u></p>   | <p>제2절 <u>사업소분</u></p>  |
| <p>제6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u>주민세 재산분</u>(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세(<u>재산분</u>)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 <p>제6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br/>-----<br/><u>주민세(사업소분)</u> -----<br/>-----<br/>-----(<u>사업소분</u>) ---<br/>-----<br/>-----.</p> <p>② (현행과 같음)</p> |
| <p>제7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u>재산분</u>)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u>법 제83조제4항</u>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p>                              | <p>제7조(보통징수) -----<br/>-----<br/>-----<br/>-----(<u>사업소분</u>) -----<br/>----- <u>법 제83조제6항</u> -----<br/>-----<br/>-----.</p>                 |





# 사 천 시 공 보

제719호

사천시 공고 제2021 - 422호

「사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5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정이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정책방향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사업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고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기본원칙,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 나. 농촌협약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 다.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 라.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및 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6조부터 제32조까지)

# 사 천 시 공 보

제719호

마. 보칙(안 제33조)

##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기획예산담당관 협의

##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도시재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5.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도시재생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3236, FAX : 831-6042)

# 사 천 시 공 보

제719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 의견 | 비고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719호

## 사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여 읍·면소재지의 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배후마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 지원,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사업에 대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거점지역 사업(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신활력플러스, 마을만들기)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2. “신활력플러스사업”이란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말한다.
3. “농촌협약”이란 지역이 농촌공간에 대한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투자를 집중하여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 사 천 시 공 보

제719호

지자체장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추진하는 협약을 말한다.

4. “농촌공간 전략계획”이란 시·군 전체의 사회·경제·환경 및 기초생활서비스 공급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말한다.

5.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이란 전략계획에 따라 불편 없는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지자체·민간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복수 사업들의 통합계획을 말한다.

6. “전담조직(부서)”이란 농촌지역개발사업 총괄부서로 협약기획, 신규사업 신청, 사업시행, 사업준공, 시설물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중간지원조직”이란 주민과 행정기관이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원활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을 말한다.

8. “농촌협약 위원회”란 시군 및 시도 전담조직, PM단(민간전문가), 지역 주민 대표, 중간지원조직 등으로 구성되어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

9.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이란 민간인으로 구성된 농촌 신활력사업의 추진 주체로서 계획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활동가 교육, 활동조직 발굴 및 육성 등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단체(법인)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주민과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해 주민 공동체 활성화 지향

# 사 천 시 공 보

제719호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
3. 마을과 주민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
4.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자립형 지역공동체 형성
5. 환경과의 조화, 지속적인 번영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 지향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사회의 발전과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는데 있어 행정적,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농촌지역개발사업 농촌협약

제7조(기본내용) ① 시장은 농촌협약의 직접 당사자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② 시장은 농촌협약 시에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 민간주체, 공공기관 등의 핵심 관계자도 협약의 당사자로 참여를 시킬 수 있다.

# 사 천 시 공 보

제719호

③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업에 도비가 지원될 경우에는 경상남도지사도 협약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④ 협약의 대상은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농발계획”이라 한다) 등 중장기 비전에 기반하여 구성된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말하며, 농촌분야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 지자체 자체 사업, 지방이양사업,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사업 등도 활성화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8조(협약 조건) 시장은 농촌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1. 마을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지방이양사업을 반드시 연계하여야 한다.
2. 지역의 장기 계획인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발계획과 연계된 통합적 지역발전계획인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협약을 담당하는 전담조직(부서)을 두고 협약 당사자 등으로 구성된 농촌협약위원회를 조직하며 중간지원조직과 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제3장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

제9조(설치) 시장은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전담조직으로 중간지원조직을 설치·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중간지원조직의 기능) 중간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

# 사 천 시 공 보

제719호

다.

1. 마을만들기 사업지구에 대한 주민교육 및 마을 컨설팅
2. 마을만들기 기초조사 및 사업의 분석·평가·연구
3. 사업 완료지구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방안 등 사후관리
4. 마을만들기 관련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사업 완료지구의 홍보와 소통을 위한 소식지 제작과 배포
6. 지역발전과제 발굴을 위한 농촌현장포럼, 시 역량강화사업
7.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및 이행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업

제11조(중간지원조직 구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하여 하부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조직 구성, 인력운용은 시장이 정한다.

② 중간지원조직 센터의 장은 농촌지역 사회발전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농촌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시장이 임명한다.

③ 시장은 기존의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귀농귀촌센터 등이 있는 경우 기존 조직과 함께 통합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일반농산어촌사업을 위한 사무국장, 사무원 등의 인력은 별도로 두어야 한다.

제12조(센터의 운영 등) ① 시장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원센터를 선량하게 운영하고,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사 천 시 공 보

제719호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탁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매년 센터의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지원 및 정산)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간지원조직 및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중간지원조직 및 센터의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해서는 안된다.

③ 제1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운영자는 시장에게 지원받은 비용에 대한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관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무의 인계·인수를 위탁 만료 15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장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및 추진위원회 운영

# 사 천 시 공 보

제719호

제16조(추진단 구성) ①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이하 “추진단” 이라 한다)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무국, 코디네이터로 구성·운영한다.

② 추진단의 사업을 총괄하기 위하여 추진단장을 두며, 관련 사업 분야에서 역량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한다.

③ 사무국은 상근직원으로 사무국장 및 사무원을 두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역량강화 사업 발굴 및 운영, 액션그룹 발굴 및 지원 등을 추진한다.

④ 코디네이터는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하고, 사업 발굴과 조정, 액션그룹 발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7조(추진단 업무) 추진단은 신활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사업기획 및 발굴, 사업집행 및 관리 등 사업 총괄
2. 주민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액션그룹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유·무형 자원에 대한 조사, 발굴, 분석, 연구, 사업화
4. 국내·외 선진지역과 인적·물적·정보 교류 협력 및 학술대회 운영
5. 완료사업에 대한 유지관리·운영 등 사후관리
6. 시가 위탁한 사업 및 신활력사업 제반 분야에 대한 지원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추진단 운영) ① 추진단은 원활하고 지속적인 사업을 위하여 재단법인,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으로 법인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추진단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19호

③ 시장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단에 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사무국 인건비, 운영경비 및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운영을 위하여 지원 보조사업체를 대상으로 운영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19조(추진단의 의무) ① 추진단은 시와 신활력사업 시행의 공동 주체로서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최대의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과 사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추진단은 관계 법령과 조례 및 위·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부서의 행정적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추진단은 수탁 받은 시설을 시장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추진단이 수탁 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은 시 재산으로 귀속된다.

④ 추진단은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해서는 안된다.

제20조(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추진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제2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진단의 사업 운영 전반을 지도·감독하게 하거나 운영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

# 사 천 시 공 보

제719호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추진단에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추진단에 알리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추진단이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발주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미리 전담부서 또는 업무 담당 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신활력플러스 액션그룹 및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교육기관에 민간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추진위원회 설치) 신활력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발전 방향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제23조(추진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신활력사업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사업비 투자결정 및 세부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의사 결정
3. 제반 사업에 대한 조사·평가 및 중·장기 발전계획
4. 추진단 운영·관리 감독, 직원채용 및 감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신활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 사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부서, 기관 및 단체에 의견을 제시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제24조(추진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

# 사 천 시 공 보

제719호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민간위원장(추진위원간 호선 또는 추진단장 겸임 가능)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신활력사업 업무 담당 부서장
2. 신활력사업 액션그룹 대표자
3. 자문위원 및 민간단체 대표
4. 지역 주민의 대표
5. 신활력사업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2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6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

# 사 천 시 공 보

제719호

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해촉 일자, 해촉 사유 등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

제2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2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위원장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공동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

# 사 천 시 공 보

제719호

우에는 위원장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신활력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3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2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시장은 신활력사업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 제5장 보칙

제33조(준용) 이 조례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등을 준용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19호

## 관 련 법 규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0조(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공동체 및 지역 간 연계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시·도 및 광역협력권의 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3. 수도권발전에 따른 영향분석을 고려한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할 때 지역산업 육성, 인재 양성, 과학기술 진흥, 교통·물류시설 확충, 문화·관광 육성, 환경 보전, 복지·보건의료의 확충 등 관련 부문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관련 부문에 대한 재정 지원 및 규제완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4(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농어촌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농어업법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에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준, 지원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농어촌산업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에 고유하거나 독특한 특산

# 사 천 시 공 보

제719호

물·전통문화·경관 등 유형·무형의 자원(이하 “특산물등”이라 한다)을 활용한 식품가공 등 제조업,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이하 “농어촌산업”이라 한다)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특산물등의 조사·발굴 및 권리보호에 관한 지원
2. 특산물등의 상품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에 관한 지원
3. 특산물등의 판매촉진을 위한 상표·포장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지원
4. 특산물등의 생산자 및 판매자에 대한 자금 지원
5. 특산물등의 생산기술의 전수·계승 및 이와 관련된 인력육성의 지원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등 기업집적화 및 농어촌산업 인프라 조성 지원
7. 농어촌산업 창업 및 역량강화 지원
8. 그 밖에 농어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38조(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근 마을을 하나의 권역(圈域)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1. 주거환경의 개선
2. 생활기반시설의 확충
3. 정보이용시설 및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4. 농어촌의 경관 보전
5. 농어촌관광의 진흥, 농어촌산업의 육성 등 주민소득의 증대
6.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 등에 관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시행하려면 해당 지역의 주민을 최대한 참여시켜야 하며, 이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은 가급적 「지방소도읍육성 지원법」

# 사 천 시 공 보

제719호

제4조에 따른 종합육성계획과 연계하여 세워져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9조(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문화·복지 기능이 확충된 적정규모의 농어촌 거점지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육성하여야 한다.

1. 적절한 토지이용 및 주요기반시설 조성
2. 적정 인구 수용 및 주거시설 조성
3. 교통·산업·보건의료·교육·복지 시설의 설치
4. 환경 보전 및 조성
5. 그 밖에 농어촌 거점지역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어촌 거점지역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